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2차 연구토론회

# 동유라시아 지역 직물(織物)의 생산과 유통

- 일시: 2023년 11월 11일(토) 14: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205호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2차 연구토론회

# 동유라시아 지역 직물(織物)의 생산과 유통

- 일시: 2023년 11월 11일(토) 14: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205호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제2차 연구토론회 일정\_2023년 11월 11일(토)

- 주제: 동유라시아 지역 직물(織物)의 생산과 유통 -

개회식	
14:00~14:10	인사말   노대환(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장 겸 HK+사업단장)
1부 발표	
14:10~14:30	사회   권기석(동국대) 【제1발표】 古代 한반도의 織物 생산과 활용 발표   이승호(동국대)
14:30~14:50	【제2발표】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織物) 유통 발표   김장구(동국대)
14:50~15:00	휴식
2부 발표	
15:00~15:20	사회   이해진(동국대) 【제3발표】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靑布와 藍布를 중심으로 발표   임경준(동국대)
15:20~15:40	【제4발표】 雪域의 스승이 초원의 칸에게: 티베트 직물 氍毹(phrug) 연구 발표   최소영(동국대)
15:40~16:00	【제5발표】 명대 공문용 종이의 공급방식 발표   정상호(전북대)
16:00~16:10	휴식
16:10~17:30	【종합토론】 토론: 김윤정(서울역사편찬원), 정병진(강원대), 남민구(동국대), 이완석(동국대)



# 목 차

【제1발표】 이승호(동국대) 古代 한반도의 織物 생산과 활용 .....	11
【제2발표】 김장구(동국대)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織物) 유통 .....	37
【제3발표】 임경준(동국대)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靑布와 藍布를 중심으로 .....	59
【제4발표】 최소영(동국대) 雪域의 스승이 초원의 칸에게: 티베트 직물 氍毹(phrug) 연구 ..	71
【제5발표】 정상호(전북대) 명대 공문용 종이의 공급방식 .....	83



【제1발표】

## 古代 한반도의 織物 생산과 활용

이승호(동국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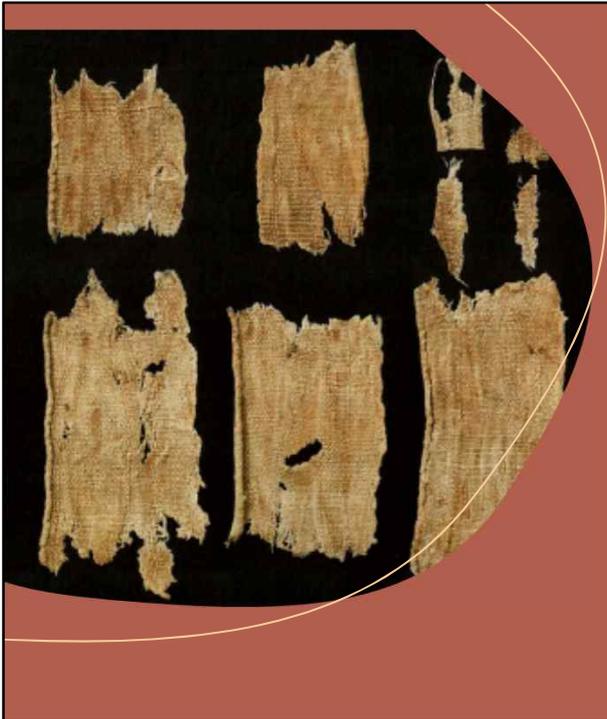
머리말

I.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II. 직물의 활용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맺음말





## 古代 한반도의 織物 생산과 활용:

三韓 시기 織物貨幣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겸하여

이승호(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머리말

- 織物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확인되는 **三國時代로 오면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貢納이나 **租稅 제도**의 측면에서, 혹은 **지배층의 사치 문화**와 **교역 물품**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음
- 또한 신라 宮中 혹은 **王室의 工房**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이 확인되는 통일신라시대로 오면 그 생산 과정의 체계성과 **직물 생산의 기술적 진보**가 주목되기도 하였음

## 머리말

- 그러나 한국 식물 역사의 시작점에 있는 **三韓 시기 식물의 생산 환경이나 그 활용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실정**
- **기록의 부재**와 전하는 고고 **물질 자료의 영세함**이 연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 머리말

-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제약을 인정한 위에서
  - ① 당 시대의 **식물과 관련한 문헌 기록을 검토한 뒤**
  - ② 현재까지 확보된 **三韓 시기 식물과 관련한 고고 물질 자료를 일별**하고
  - ③ 당대에 이러한 **식물이 화폐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려 함**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고대 한국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직물 생산과 관련 기록이 확인됨
- 곧 백제·신라·가야의 前史로서 **三韓 시대로부터 그 기록이 확인됨**
- 바로 다음의 『삼국지』 **동이전 한전**의 기록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 사료 (가)-①

布袍를 입고 발에는 가죽으로 만든 躡蹋을 신었다(衣布袍, 足履革躡蹋)

### • 사료 (가)-②

[弁辰의] 蠶桑에 밝아 縑·布를 지었다(曉蠶桑, 作縑布)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위의 기록을 통해 당시 韓人은 **일상적으로 布衣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음
- 또 비록 弁辰과 관계한 기사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三韓 지역에서 **養蠶이 이루어졌음**도 확인
- 또 이보다 뒤 시기에 성립한 『**후한서**』 **동이전 한전**의 다음 기록을 보면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 사료 (가)-③

**馬韓人은 田·蠶을 할 줄을 알며, 縣·布를 지었다(馬韓人知田蠶, 作縣布)**

- 이를 통해 **馬弁辰 공히 견직물과 마직물을 모두 제작할 수 있었음을 확인**
- 곧 한반도에서 **일찍부터 견직물과 마직물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한편, 위의 (가)-2 및 (가)-3의 기록을 통해 馬韓과 弁·辰韓이 서로 **특산 옷감이 달랐다고 보기도 함**(정덕기, p.41)
- **馬韓에서는 '絛'**이, **弁·辰韓에서는 縑**이 특산이었다는 것
- 그러나 위의 단편적 기록을 통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
- **縑이나 絛(綿紬) 모두 평직물**로서 당시 양자 간 제작 기법이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함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이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해 실제 馬韓과 弁·辰韓에서 제작된 **직물의 실물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 아쉽게도 현재로서 三韓 시기 견직물에 대한 **실물 자료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여기서는 우선 현재까지 **확인되는 삼한 시기 직물의 실제 사례를 정리**함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연번	지역/시대	유물	출토유적	소장기관	비고
1	마한/초기 철기	마직물	광주 신창동 유적	국립광주박물관	토기 저부 흡착
2	변한/三韓 전기 (2C 후반~3C)	마직물	김해 양동리 유적	동의대학교	동모 동반 출토
3		마직물		국립김해박물관	동경 고리 끈
4	마한/三韓 후기 (4C~5C 전반)	?직물	청원 송대리 유적	국립청주박물관	마형대구 부착
5		?직물	11호 토광묘		철부 손잡이 부착
6		?직물	청원 송대리 유적		철편 부착
7		?직물	24호 토광묘		손칼 부착
8	마한/三韓 시기	?직물	천안 청당동 유적	국립중앙박물관	
9		?직물	평택 대추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직구장경호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광주 신창동 유적
- 토기 저부 흡착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김해 양동리 유적
- 동모 동반 출토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김해 양동리 유적
- 동경 고리 끈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청원 송대리 유적
- 마형대구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청원 송대리 유적
- 철부 손잡이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청원 송대리 유적
- 철판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청원 송대리 유적
- 손칼



## 1. 三韓 시대의 織物 생산

- 천안 청당동 유적



## 2. 植物의 활용 - 植物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 화폐로서 鐵의 한계

- 삼한 시대 흔히 화폐의 용도로 쓰인 것은 잘 알려진 대로 鐵이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의 바탕이 되는 사료는 아래의 기록이 대표적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 사료 (나)

나라에서는 鐵이 나는데, 韓·濊·倭가 모두 와서 이를 취한다. 諸市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모두 鐵을 쓰는데, 中國에서 錢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樂浪, 帶方] 이를 2郡에 供給하였다(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또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삼한 시기 무덤 유적에서는 다량의 덩이쇠(鐵挺)가 출토되는 사례도 빈번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하지만 과연 이러한 鐵이 주민집단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물품이었을까**
- 민간에서 이것을 다량으로 지니고 다니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물품으로 보기는 무리**
- 당시 **철기의 제작은 정치권력에 의해 독점**되었고 기술의 확산도 제한적이었으며 **민간에서의 일상적 제작은 불가능했음**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정치권력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특정 제철 공방에서 **소수의 전문 인력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되었던 것이 당시의 철기
- 이렇게 제작된 철기는 당시 최고위 지배층, 즉 **소수 엘리트만이 그 생산과 유통을 독점**할 수 있었을 것
- 즉 사료 (나)의 기사는 민간에서 鐵이 일상적 화폐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기 어려움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기사를 살피면,
- 弁辰의 鐵을 “韓·濊·倭가 모두 와서 취한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 대체로 **외부 세력과 대외적 교섭·교역에서 사용**된 화폐로 이해
- 또 “**市에서 물건을 살 때 모두 鐵을 쓰는데, 中國에서 錢을 쓰는 것과 같다**”는 구절에서도 여기서의 “市”는 민간의 일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던 장소가 아닌,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대외 교역이 이루어지던 **국가 주도의 關市에서의 풍경**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
- 이러한 鐵을 “**樂浪郡과 帶方郡에 공급하였다**”는 대목에 주목해 볼 때 이러한 이해의 타당성을 확인
- 즉 이는 당시 **樂浪郡이나 帶方郡 측 관리나 상인들의 눈에 비친 삼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지역 민간의 **일상적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니**라 생각됨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요컨대, 당시 鐵은 민간에서 일상적 화폐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 - 錦·繡·罽 등을 보배[珍]로 여기지 않았다?

- 한편, 三韓 시기 사람들의 직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기사도 존재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사료 (다) 『삼국지』 동이전 한전

瓔珠를 財寶로 여겨 옷에 꿰어 장식으로 삼기도 하고, 목에 걸거나 귀에 늘어뜨리기도 한다. 金·銀과 錦·繡는 보배[珍]로 여기지 않는다(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사료 (라) 『후한서』동이열전 한전

① 金·寶·錦·罽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牛馬를 탈 줄 모른다. 오직 瓔珠 만을 중히 여겨 옷에 꿰어 장식으로 삼고 목에 걸거나 귀에 늘어뜨리기도 한다. 대체로 모두 머리를 묶어 상투를 드러내 놓고, ② 布袍를 입고 짚신[草履]을 신는다 (不貴金寶錦罽, 不知騎乘牛馬, 唯重瓔珠, 以綴衣爲飾, 及縣頸垂耳. 大率皆魁頭露紒, 布袍草履).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위 기록을 보면 金·銀·寶·錦·繡·罽 등을 당시 삼한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
- 이 또한 앞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樂浪郡이나 帶方郡 측의 시선에서 묘사된 굴절된 역사상일 것이라 판단됨
-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금은보화와 함께 錦·繡·罽 등 견직물과 모직물에 대한 인식이 주목됨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앞의 (가)-①·②·③과 (라)-② 기록을 보면, 당시 삼한인은 **養蠶에 밝았으나 즐겨 입는 옷은 布袍, 즉 布衣**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곧 당시 삼한인에게 있어 **布의 사용이 좀 더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줌
- 그렇다고 기록 대로 삼한 사람들이 **錦·繡 등의 견직물이나 罽 등의 모직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이러한 인식은 樂浪·帶方人の 시선에서 **이러한 물품들이** 당시 삼한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거나 **활발하게 유통·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됨
- 이러한 점에서 해당 **기록들에서 ‘布’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음**이 주목됨
- 이는 반대로 말하면 **布의 경우 삼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유통되던 물품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이는 기록에서 삼한인이 布衣를 즐겨 입었다고 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삼한 사회에서 布가 화폐처럼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유통되던 물품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을 가능케 함
- 이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아래의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서 확인됨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 사료 (마)

(樂浪)郡은 곧 鎡을 통역으로 삼아 碇中으로부터 큰 배를 타고 辰韓에 들어가서 戶來와 항복한 동료를 맞이하여 천여 명을 얻게 되었다. 다른 오백 명은 이미 죽었다. 鎡가 이때 辰韓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5백 명을 돌려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樂浪이 곧 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 사료 (마)

辰韓이 말하기를 “5백 명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贖直를 낼 뿐이다”라고 하며 이에 **辰韓人 만 오천 명과 弁韓布 만 오천 필을 내어놓았다.** 鎡는 이를 거두어 곧바로 돌아왔다. (樂浪)郡에서는 功義를 表하고, 冠幘과 田宅을 내려주었으며, 그 자손은 대대로 安帝 延光 4년(A.D. 125)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런 까닭으로 賦役을 면제받았다.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위의 기록은 廉斯鎡가 辰韓의 습격을 받아 잡혀간 낙랑인 1,500명 가운데 죽은 500명을 제외한 **1,000명의 낙랑인을 구출한 사건**을 전함
- 이때 廉斯鎡는 辰韓을 압박하여 **죽은 500명의 낙랑인에 대한 보상**으로 辰韓人 만 오천 명과 弁韓布 만 오천 필을 거두어 낙랑군으로 귀환하였다고 함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이는 당시 辰韓이 낙랑군 측에 죽은 낙랑인에 대한 贖直로 건넨 것
- 이를 통해 弁韓布가 당시 사회에서 화폐 대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줌
- 무엇보다도 15,000필이라는 수량이 주목

## 2. 직물의 활용 - 직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이러한 점에서 당시 삼한 사회에서는 布, 즉 마직물이 보다 일상적으로 거래·유통된 마치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됨
-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유물을 관찰하면

## 2. 식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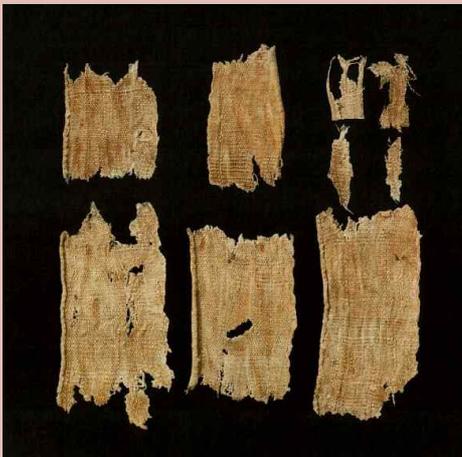
## 2. 식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위의 사진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삼베**로서 유적  
편년은 **초기철기시대**로 추정됨
- 해당 유적에서는 방추차, 실감개, 직조용 바디, 삼베 조각  
등이 함께 발견
-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면 **대마를 이용  
한 製織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특히 해당 유물이 **토기편 내부 바닥면에 흡착되어 발견된** 사실이 주목
- **다량으로 제작한 삼베를 저장·보관한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측
- 또 다음의 유물을 관찰하면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이는 김해시 양동리 제200호분에서 출토된 마직물로서 시기는 2C 후반~3C 초반으로 편년됨
- 발견된 직물은 성분 분석을 통해 대마를 원료로 하는 삼베 임이 확인되었음
- 그 모습이 마치 규격에 따라 정연한 형태로 조각나 있는 것으로 보여 화폐로서의 기능을 추측케 함

## 2. 직물의 활용 - 식물 화폐의 가능성 검토 -

-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삼한 시기부터 민간에서 마직물에 대한 생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측
- 이렇게 생산된 마직물은 복식 제작을 비롯하여 일상 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
- 이와 함께 제한적으로나마 민간에 유통되면서 거래에서 화폐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안

## 맺음말

- 생략 -

##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2020 『가야 직물』
- 국립부여박물관 2011 『유물 속에 숨은 예술 고대직물』
- 박선희 1999 「고대 한국의 마직물」 『선사와 고대』 13
- 박남수 1996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 박윤미 2003 「伽倻와 古墳時代の 麻織物の 비교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4
- 정덕기 2023 『신라 상대 관복제도사』 역사산책
- 정유진·김민구 2022 「삼국시대 대마 재배 : 나주 북암리유적 토기압흔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화』 100

감사합니다

【제2발표】

##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織物) 유통

김장구(동국대)

---

I. 머리말

II. 대몽골국 성립 이전 북아시아의 직물 유통

III. 대몽골국 성립 이후 동유라시아의 직물 유통

IV. 맺음말



#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織物) 유통<sup>1)</sup>

김장구<sup>2)</sup>

## I. 머리말

동(東)유라시아의 북부 지역, 즉 오늘날의 몽골고원인 북아시아의 고대 유목국가 구성원들은 오종(五種) 가축을 위주로 하는 유목(遊牧)을 생업으로 영위하며, 일부는 수렵(狩獵)과 어로(漁撈) 활동을 통해 부족한 경제력을 다소나마 보충하였다. 따라서 고대 유목국가의 생산 경제력은 비교적 단순하였으며, 이 때문에 주변 오아시스 도시 지역이나 정주 농경국가들과의 물품(物品) 교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sup>3)</sup>

그 방향은 주로 서쪽의 오아시스 지역과 남쪽의 중국 지역이었다. 물론 동쪽의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의 고대국가들과도 다양한 교류를 했겠지만, 기록이 많지 않으며 또한 서쪽과 남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특히,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의 도시국가에 대한 패권을 둘러싼 유목 세력과 중국 세력의 경쟁은, 흉노(匈奴)제국과 진한(秦漢)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치열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은 흉노제국이 강성했을 때나 약해졌을 때를 막론하고, 중국 지역에서 흉노제국에 보냈던 물품의 종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노제국의 서방[西域] 원정 이후 세력이 강성했을 때인 한(漢)나라 초기에 문제(文帝)가 목득[冒頓] 선우(單于)에게, “선우께서 몸소 군사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벌해 비록 전과는 얻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 하니 짐의 의복인 수겹기의(繡袷綺衣), 장유(長襦), 금포(錦袍) 각 1벌, 비소(比疏) 1개, 황금으로 만든 황금 허리띠[黃金飾具帶]와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黃金犀紕] 1개, 수놓은 비단[繡] 20필, 비단[錦] 20필, 붉은색의 두꺼운 비단[赤緹]과 푸른색 비단[綠繪] 40필씩을 보내 오.”라며 선물을 보냈다.<sup>5)</sup>

물품 목록을 보면, 황제가 착용하는 의복과 장신구 이외에도 다양한 비단 등 견직물(絹織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2)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HK연구교수

3) 이개석, 「몽고帝國 성립기 商業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 9, 1986;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11~16쪽.

4) 강인욱,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 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16~21쪽; idem,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100, 2018, 66~71쪽.

5) 『漢書』 卷94上 「匈奴傳」 第六十四上, 375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漢書 外國傳 譯註』 上, 동북아역사재단, 2009, 87~88쪽; 정재훈, 『흉노 유목제국사, 기원전 209~216』, 사계절, 2023, 141쪽.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서방 원정 이후로 중국과 서방을 잇는 교통로를 장악한 흉노는 이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이제 동쪽의 조선(朝鮮)에서 서쪽의 강거(康居)로 이어지는 ‘초원길’ 운영의 주체가 되어 개별 세력이 분점하던 교통로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아가 동서 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흉노는 중국의 자원을 최대한 얻어내 흉노 사회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였다.<sup>6)</sup>

한편 흉노제국의 내분과 고립으로 인해 약해진 흉노의 호한야(呼韓邪) 선우는 기원전 51년 한나라에 신속(臣屬)하기 위해 장안(長安)으로 향했다. 남하한 [호한야] 대 선우는 감천궁에 도착해 새해를 축하하는 조회[朝賀]에 참석했다. “漢[선제(宣帝)]은 그를 특별한 예로 우대하여 지위를 제후왕보다 위에 두고, 자신을 배알할 때 신(臣)이라고 칭하되 이름을 말하지 않게 했다. 이와 함께 대선우에게 관모와 허리띠, **저고리와 치마**, 황금으로 만든 도장[璽]과 여초(罽草)로 염색한 도장 끈, 옥으로 장식한 검과 허리에 다는 칼, 활 하나와 화살 4묶음, 덮개로 싸여 있는 의장용 창 10자루, 의자가 달린 수레[安車] 1대, 말안장과 고삐 1세트, 말 15필, 황금 20근, 20만 전, **의복 77벌, 수놓은 비단[錦繡], 고운 주름 비단[綺縠]** 등과 **여러 종류의 비단 8000필, 명주솜 6000근** 등을 주었다.” [이것은]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수량이었다. 조례(朝禮)가 끝난 뒤, 선제는 사자를 시켜 호한야보다 먼저 장안으로 가면서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sup>7)</sup>

이 때 한나라 선제가 흉노의 호한야 선우에게 선물로 준 물품 중에는 선우에게 걸맞은 의례용 물품과 무기, 수레, 말, 황금 등과 함께 의복과 다양한 비단과 명주솜 등 견직물(絹織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흉노제국은 강했을 때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나라를 압박하여,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한나라에 신속(臣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중국[漢]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북아시아의 유목 세력과 주변 세력과의 경쟁 관계는 튀르크[突厥] 제국과 위구르[回鶻]제국 시기에도 동일하게 되풀이 되었다.<sup>8)</sup> 예를 들면, 튀르크 제국은 그 영역이 흉노 때보다 더 서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서아시아의 사산 왕조뿐 아니라 멀리 비잔티움 제국과도 빈번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튀르크 제국과 사산 왕조는 비단 교역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즉, 튀르크 제국은 소그드 상인 마니악이 이끄는 상인단을 사산 왕조에 파견했지만, 사산 왕조는 이들이 가져온 비단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고 자신들이 독점해오던 비단의 국제 교역에 튀르크와 소그

6) 정재훈, 같은 책, 144쪽.

7) 『漢書』 卷94下 「匈奴傳」 第六十四下, 379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175~176쪽; 정재훈, 같은 책, 255~257쪽.

8)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2016; idem,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학과지성사, 2005를 참조하시오.

드[상인집단]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었다.<sup>9)</sup>

위구르 제국 멸망 이후에 북아시아 지역은 거란[遼]과 여진[金] 등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통제하였지만, 유목민 사회 내부는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오랫동안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서로 공격하고 약탈하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였다. 『몽골비사[元朝秘史]』를 비롯한 관련 사료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상황은 칭기스 칸이 등장하여 대몽골국을 성립할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런 상황에서 칭기스 칸은 무엇보다 몽골초원의 분열된 여러 세력을 통합하고, 주변 세력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유목민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부를 통합하고 주변의 몽골계 유목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오랜 분열과 전쟁으로 인해 가축과 물자가 부족해진 몽골초원을 안정시킨 후에 외부 세계를 압박하거나 침략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다양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206년에 칭기스 칸의 대몽골국 성립과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카안[元世祖]이 1276년에 남송(南宋)을 정복함으로써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일방적인 우위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앞서 필자는 대몽골국 성립을 전후하여 몽골고원에서 유통되었던 다양한 물품에 대해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1)</sup> 따라서 일부 사료와 내용이 겹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대몽골국 성립을 전후하여 북아시아 초원에서 유통되었던 식물들을 모직물,<sup>12)</sup> 견직물, 면직물 등 소재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견직물[비단]은 역대 유목국가의 통치자와 구성원들이 가장 좋아하여 구하고 싶은 물품이었고, 중국 측에서는 비단을 이용하여 북방 유목민들을 달래거나 굴복시키는 등 다양한 정치적 의도로도 사용하였다.

## II. 대몽골국 성립 이전 북아시아의 식물 유통

대몽골국 성립 이전, 혼란했던 시기의 북아시아 초원의 식물 유통 상황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주로 모피(毛皮)를 획득하기 위해 사냥을 하거나 가축의 털을 이용해 만든 모직물에 대한 언급이 많다. 다음에 열거한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9) 김호동, 같은 책, 78쪽.

10) 저자미상, 『몽골비사[元朝秘史]』(유원수 역주), 사계절, 2004.

11) 김장구, 「대몽골국 성립 전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 111~140쪽; idem,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2022, 101~137쪽; idem, 「대몽골국 초기 고려-몽골 간 물품 이동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5, 2022, 83~117쪽.

12) 모직물은 모피와 피혁 제품도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㉔-1.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은 **담비(buluḡa)**와 **다람쥐(keremü)** 같은 사냥감이 있는 자신의 코리 토마드 땅에서 사냥을 금하는 바람에 그곳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자, … 보르칸을 일으킨 신치 바얀의 오리양카이족의 땅으로 옮겨 오고 있었다.<sup>13)</sup> [『몽골비사』 §9]

㉔-2. … 숲 속에서 오리양카다이족 사람이 세 살 난 **사슴(buḡu)**을 죽여 그 갈비와 창자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도본 메르겐이 “동무여, 나눕시다!”하고 말했다. [『몽골비사』 §12~13]

㉔-3. ‘카불 칸이) … 그 뒤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알탄 칸 앞으로 가서는 그의 수염을 잡는 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그에게 하사할, 그의 키만큼 될 금과 보석과 **의복**을 창고에서 가져오도록 하여 모두 그에게 준 뒤, 최대한으로 그를 깎듯하게 대하여 돌려보냈다.’ [『집사』 「칭기스 칸 기」]<sup>14)</sup>

㉔-4. 거기서 함께 나아가 보르칸 칼돈의 남쪽, 쿠렐쿠 안에 있는 생구르 개울의 카라 지루켄의 쿠쿠노르에서 살고 있을 때는 **타르바가(tarbaya)**, **들쥐(küčügür)** 등을 잡아 연명했다. [『몽골비사』 §89]

㉔-5. 벨구테이는 꼬리가 짧은 공골말을 타고 **타르바가(tarbaya)**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저녁에 해가 진 뒤에야 벨구테이는 꼬리가 짧은 공골말에 **타르바가**를 싣고, 자신은 몸을 흔들며 걸어왔다. [『몽골비사』 §90]

이상의 사료에 나오는 사냥감들을 살펴보면, 담비와 다람쥐, 사슴, 타르바가, 들쥐 등이 보인다. 이를 통해 몽골부의 세력형성 초기부터 테무진의 유년기까지 몽골인들은 사냥을 통해 음식물 일부를 구하고 아울러 사냥한 동물의 모피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아울러 사료 ㉔-3을 보면, 칭기스 칸의 증조부인 카불 칸 시대에 몽골부 세력이 비교적 강했을 때 금나라 황제[알탄 칸]가 많은 금은보석과 함께 의복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카불 칸 시대에도 몽골부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던 의복 등 일부 물품은 이웃 정주지역[金]으로부터 획득하였던 것이다.

한편 몽골 사회에서 가장 우수하며 값비싼 모피는 단연코 ‘검은담비 모피’였다. 검은담비의 모피 수습 장을 이어 붙여 만든 외투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몽골초원의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최적의 방한복이었다. 다음 사료를 보면 테무진에게서 ‘검은담비 외투’를 선물로 받은 옹 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㉕-1. … 켈루렌 강의 발원 지역인 부르기 기슭에서 목영할 때 ‘초탄 어머니의 예물’이라고 처가에서 **검은담비 외투(qara buluyan daqu)**를 보내왔다. … 테무진이 옹 칸에게 가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바 있습니다. …”고 하며 **담비 외투**를 주었다. 옹 칸은 매우 기뻐하며 이르기를, “검은담비

13) 이하 『몽골비사』의 번역과 전사는 유원수 역주본(사계절, 2004)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일부 필자가 수정한 부분도 있다.

14) 라시드 앗 단, 『집사·2』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3, 56~57쪽.

15) 몽골인의 사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오. 原山焯, 「モンゴル狩獵考」, 『東洋史研究』 31-1, 1972; Münküev N. Ts., A Mongolian Hunting Practice of the 13th Century and the Buryat Terms Zeegete aba and Aba Khaidag, *Tractata Altaica*, 1976; Allsen Th. T.,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 2006.

외투의 담례로 흠어진 너의 백성을 모아 주마! 담비 외투의 보담으로 헤어진 너의 나라를 합쳐 주마! ... 라고 했다. [『몽골비사』 §96]

이 기록은 1183년 경, 테무진이 처가[장모]로부터 결혼 예물로 받은 검은담비 외투를 아버지 이수게이의 의형제였던 옹 칸에게 선물함으로써, 훗날 테무진이 몽골부를 통일하고 이어서 대몽골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료를 보면, 검은담비 모피로 만든 의복은 일반 평민(qaraču)은 입을 수 없었으며, 대부분 부유한 귀족(noyan)들이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㉔-1. ... 오리양카이 사람 자르치오다이 노인이 풀무를 지고 젤메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오난 강의 델리운 동산에서 테무진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담비 가죽 배내옷(buluyan nelkei)을 주면서 나의 이 아들 젤메도 주었다. ...” [『몽골비사』 §97]

㉔-2. 오도이드 메르키드가 도망할 때 담비 가죽 모자(buluyan mayalai)를 쓰고, 암사슴의 종아리(maral-un yodun)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털을 없애고 무두질한 수달피(usun-u buluyan) 가죽을 이어 만든 옷을 입은 다섯 살 난 쿠추라는 이름의, 눈에는 불이 있는 소년이 목영지에 떨어진 것을 우리 군대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몽골비사』 §114]

이 기록은 1184년 경, 테무진이 옹 칸과 자모카와 함께 삼성(三姓) 메르키드를 섬멸하고 나서 전장이 되었던 목영지에 홀로 남겨진 ‘쿠추(Küčü)’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는 상황이다. 어린 쿠추의 차림새를 보면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자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집사』 「부족지」에는 삼림 우랑카트 종족에 대해 ‘그들은 결코 천막을 소유하지 않았고, 의복은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소나 양이 없었고, 山牛나 산양, 혹은 산양과 비슷한 느령이<sup>16)</sup> 소나 양 대신 키웠다. ... 초원과 평원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山牛와 다른 짐승들에게 다가가 죽인다.’<sup>17)</sup>고 기록하고 있어 초원의 유목민과는 다른 수렵민인 삼림 우랑카트 종족의 삶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료 ㉔~㉔에서 보이는 직물류는 ㉔-3에 보이는 금나라 황제가 준 ‘의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담비, 다람쥐, 사슴, 타르바가, 들쥐, 암사슴, 수달 등 동물의 모피[모직물]만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 초기 몽골부 시기에는 외부와의 직물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은 칭기스와 토고릴[옹 칸]이 타타르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면

16) mon. jür. 야생 암노루, 우리말로 ‘느령이’라고 한다.

17) 라시드 앳 딘, 『집사·1』 「부족지」(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2, 190~191쪽.

이다.

㉔-1. 칭기스 카한과 토고릴[웅] 칸은 그렇게 요새를 구축한 (타타르 부의) 메구진 세울투를 그의 요새에서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의 은제 요람과 진주 담요(tanatu könjile)를 칭기스 카한이 가졌다.’ [『몽골비사』 §133]

이 내용은 『집사』 「부족지」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칭기스 칸)는 이 전투에서 은(銀)으로 만든 요람과 금실로 꿰맨 [진주] 담요, 그리고 기타 여러 재물들을 약탈물로 빼앗았는데, 이는 그 당시 타타르 종족들이 모든 유목민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풍부했기 때문이다.’<sup>18)</sup> 라고 거의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도 ‘칭기스 칸은 쿠리엔으로 이루어진 휘하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했다. 그를 붙잡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말 떼와 가죽과 물자를 노략했다. 그렇게 약탈하는 도중에 은으로 만든 요람과 금실로 짠 이불을 빼앗았는데, 그 당시 몽골인들 사이에서 그 같은 사치품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여겨져 널리 알려졌다.’<sup>19)</sup>라고 되고 있다.

이어서 다음 기록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㉔-2. ‘타타르족이 요새화한 나라토 시투겐의 목영지를 약탈할 때 우리 군인들이 목영지에 버려진 한 어린 소년을 발견했다. 금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금박 물린 비단(dajī toryan)과 담비 가죽(buluγan)으로 안감을 댄 조끼(heligečitü)를 입은 소년이었다. 데려다가 칭기스 카한이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sauya)<sup>20)</sup>입니다”하고 드렸다.’ [『몽골비사』 §135]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1196년에 타타르를 섬멸하고 그 목영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 ‘시키겐 코도코’라는 이름을 주어 여섯 번째 아들로 길렀다는 내용이다. ‘시키겐 코도코’가 어릴 때 금 귀걸이와 코걸이를 하고,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아 타타르부의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기록들을 통해 금나라의 후원을 받고 있던 타타르부는 상당히 부유했으며, 몽골부는 상대적으로 귀중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사료 ㉔-1과 ㉔-2에서는 ‘타타르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고급 직물류인 진주[금실로 꿰맨~짠] 담요와 금박 물린 비단, 그리고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를 언급하고 있어, 외부 정주세계인 금(金)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타타

18) 『집사』 「부족지」, 156쪽.

19) 라시드 앳 단, 『집사』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3, 153쪽.

20) 몽골시대 ‘선물(sauya)’의 활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Yihao Qiu, “Gift-Exchange in Diplomatic Practices during the Early Mongol Period”, *Eurasian Studies* 17, 2019, pp. 202-227; 설배환,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 경제 정치 네트워크-”, 『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을 참고하십시오.

르부의 부유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1202년 '노카이 일', 즉 개해 봄에 칭기스 칸은 알치 타타르와 차간 타타르를 치기 위해 울쿠이 실지울지트라는 강가에 출정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어느 누구도 약탈물을 취하느라 정신을 팔아서 안 된다. 전투가 끝나고 적을 없앤 뒤에, 약탈물을 거두어 그 모두를 공평하게 각자에게 나눌 것이다”라고 했고, 모두 이에 대해 합의했다.<sup>21)</sup>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품이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대몽골국의 군사조직이 기존의 원심력이 강한 유목 부족적 성격에서 칭기스 칸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이 강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제시된 기록이다.<sup>22)</sup>

다음 기록은 칭기스가 유목세계의 유력한 지도자로 떠오르자 멀리 중앙아시아 출신의 상인 '아산'이 응구드 지역을 거쳐 몽골초원으로 장사하러 찾아오는 장면이다.

㉞-1. '응구드 족의 알라코시 디기드 코리에서 온 사르탁 사람 아산이 흰 낙타(čaya'an teme'e)를 타고, 일천 마리의 거세 양(irges)을 몰고 담비(buluγa), 날다람쥐(keremü)와<sup>23)</sup> 바꾸러 에르구네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 발조나 호수로 들어가다가 만났다.' [『몽골비사』 §182]

몽골 역사에서 유명한 이 기록은 1203년 경, 칭기스 칸이 케레이드의 옹 칸의 습격을 받아 발조나 호수로 피신해 있을 때, 사르탁(호레즘) 상인인 아산이 그 곳을 지나다가 칭기스와 만났을 때이다. 이 상황은 아산이 칭기스에게 명운을 걸고 몽골고원으로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아산의 속마음은 추후 칭기스 칸이 승리했을 때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미리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또한 칭기스 칸은 아산을 통해 호레즘 왕국 등 서아시아의 정보를 얻기 위한 계산이었다.<sup>24)</sup> 이 장면에서도 역시 담비가죽[貂(鼠)皮]과 날다람쥐가죽[青鼠皮]이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사료 ㉞~㉞에 보이는 직물류는 『몽골비사』 133절과 『집사』 「부족지」의 진주[금실로 꺾맨~짚] 담요와 135절의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 등이다. 여기서 언급된 진주[금실] 담요,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 등은 분명히 몽골고원 동부의 타타르부를 공격하여 약탈한 것이지만, 아마도 그 전에 외부 정주지역[金]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직물류들이다.

금나라가 타타르부를 앞세워 몽골초원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전, 금나라 건국 초기

21) 『집사』 2, 「칭기스 칸 기」, 199~200쪽.

22) 라츠네프스키, 『칭기스 칸』(김호동 옮김), 1992, 67~68쪽.

23) 우리말로는 '청설모'라고도 부른다.

24) Thomas T. Allsen,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2-2, 1989, p. 87;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권용철 옮김), 사계절, 2020, 163~164쪽.

에는 몽골[蒙古斯]이 금나라를 괴롭혔는데, 1221년 몽골을 방문했던 조공(趙珙)은 ‘옛날에 있던 몽고스[蒙古斯]국은 금나라의 위천회(僞天會) 연간(1123~1134)에 자주 금나라를 침략하여 괴롭혔는데, 금나라는 싸우다가 후에는 많은 금과 비단을 주어 화친하였다.’<sup>25)</sup>는 기록을 남겼다.

이 사료를 통해서도 당시 몽골 유목민들 역시 주변 정주지역에서 금실로 짠 비단과 금박 물린 비단 등 초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 Ⅲ. 대몽골국 성립 이후 동유라시아의 식물 유통

다음으로 1206년 대몽골국 성립 이후 칭기스 칸의 영향력이 주변세계로 확대되면서 몽골고원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다양한 식물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sup>26)</sup>

㉞-1. 칭기스 칸이 나이만 군대를 패배시키고 타양 칸을 죽였을 때, 즉 호랑이의 해(=1206년)에 오난강의 河源에 아홉 개의 다리를 지닌 흰 깃발을 세웠다. 거대한 집회와 대연회가 열렸고 칭기스 칸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그 뒤 타양 칸의 형제인 부이룩 칸을 잡을 목적으로 출정하였는데, **매 사냥**으로 정신이 없던 그를 사냥터에서 급습하여 죽여 버렸다. 그의 휘하에 있던 쿠실룩과 그의 형제, 둘 다 도주하여 에르디쉬[이르티시] 강으로 갔다.<sup>27)</sup> [『집사』 「부족지」]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나이만을 정복하고 타양 칸을 죽인 뒤 대몽골국을 성립하고 타양 칸의 형제인 부이룩 칸을 잡으러 갔을 때, 부이룩 칸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매 사냥’에 빠져 있다가 급습을 당해 죽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나이만을 비롯해 몽골고원의 유목 귀족들이 매 사냥을 즐겼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㉞-2. 칭기스 칸은 토끼의 해인 ‘타올라이 일’, 즉 603(즉 1206~1207)년에 (키르기스의) 이 두 군주에게 알탄이라는 사람과 부쿠라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어 귀순할 것을 종용했다. 그들은 휘하의 세 아미르를 흰 송골매(songqôr)를 들려 보내 배알하러 보내고 귀순해 왔다.<sup>28)</sup> [『집사』 「부족지」]

이 기록을 통해서도 몽골고원의 서북쪽에 살던 키르기스인들이 토산품인 ‘흰 송골매’, 즉 ‘名鷹’을 칭기스 칸에게 조공품으로 바친 사실을 알 수 있다.

25) 『蒙鞑備錄箋證』(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434쪽, ‘舊有蒙古斯國, 在金人僞天會間, 亦嘗擾金虜爲患, 金虜嘗與之戰, 後乃多與金帛和之’.

26) 대몽골국 성립 후 카라코룸 수도권의 역사와 동서교역에 대해서는 이개석, 「元代の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1996;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 8-2, 2019를 참고하십시오.

27) 『집사』 1, 「부족지」, 222쪽.

28) 『집사』 1, 「부족지」, 246~247쪽. 이 내용은 『집사』 「칭기스 칸 기」와 『元史』에도 있다. 『집사』 2, 「칭기스 칸 기」, 253~254쪽; 『元史』 「本紀」 第一, 太祖 二年 丁卯條(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99, 14쪽). ‘是歲, 遣按彈, 不兀刺二人使乞力吉思. 既而野牒亦納里部, 阿里替也兒部, 皆遣使來獻名鷹.’

㉞-3. (조치가) 투멘 키르기수드에 이르자 키르기수드의 노얀들인 예디 이날, 알 디에르, 우레벡 디긴 등이 흰 송골매(čaya'anuyud šingqod), 흰 거세마(čaya'anuyud aytas), 검은담비(qaranuyud buluyad) 등을 갖고 귀순해 와서 조치를 알현했다. 시비르, 케스디임, 바이드, 토카스, 텐렉(텔렝구드), 투엘레스, 타스, 바지기드(바시키르)에서 이쪽으로 숲의 백성들을 귀순시키고 조치가 키르기수드의 만호, 천호들을, 숲의 사람들의 노얀들을 데려다 칭기스 카한에게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을 바치며 알현케 했다. 『몽골비사』 §239]

이상의 기록들 ㉞-1~㉞-3은 칭기스 칸과 맏아들인 조치가 북쪽의 '삼림민(hoi-yin irgen)'들을 정복하고, 그 지방의 특산물인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을 복속을 청하는 조공품으로 바친 것을 칭기스 칸에게 가지고 온 상황이다.

㉞-1. [1208년] 겨울에는 톡타이 베키와 쿠शल룩을 치기 위해 상서롭게 출정했다. ... 그들은 메르키트의 군주 톡타이 베키와 [나이만의] 타양 칸의 아들 쿠शल룩 칸을 급습하여 두 사람을 모두 격파하고, 그의 재산과 말 떼와 가축을 모두 약탈했다.<sup>29)</sup>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몽골고원의 유목민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의 재산과 말 떼 등 가축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칭기스 칸 재위시기에 몽골과 고려의 직접적인 접촉은 1218(고려 高宗 5)년 12월, 거란의 유종(遺種)이 몽골과 동진국 군대에 쫓겨 고려 국경을 넘어오면서 시작되었다.<sup>30)</sup>

이에 다음 해[1219년] 1월에 고려의 조충과 김취려 등이 몽골과 동진국 군사와 더불어 강동성에 있던 거란 군사들을 항복시켰다. 뒤이어 몽골 장수 카친[哈眞]이 포리대완(蒲里岱完) 등 10명을 사신으로 보내 고려 측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기를 청하였다.<sup>31)</sup> 이 때 고려 측에서 돌아가는 몽골 사신들에게 수달피와 함께 명주와 베, 수달피를 선물로 주었다.<sup>32)</sup>

㉞-1. 이후 고려 측에서는 몽골 사신이 돌아갈 때 선물로 금은 그릇[金銀器], 명주[비단]와 베[紬布], 수달피(水獺皮)를 차등 있게 주었다.<sup>33)</sup>

그리고, 칭기스 칸이 중앙아시아 원정 중에 초청한 장춘진인(長春眞人)의 여정을 기록한 여행기인 『서유기(西遊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㉞-2. [辛巳年(1221) 음력 5월 下旬(27일) 夏至] ... 또한 그들은 모두 검은 수레와 흰 장막을 집으로 삼아 살며, 가축을 방목하고 사냥을 하는 것이 그 풍속이다. 옷은 무두질한 가죽이나 모피로 만들어 입고, 짐승의 고기와 젖을 음식으로 먹는다. 남자들은 머리를 땅아서 양쪽 귀 뒤로 늘어뜨린다. 부인들은

29) 『집사·2』 「칭기스 칸 기」, p. 254.

30) 『高麗史』 卷22, 高宗 5年 12月 己亥朔,

31) 『高麗史』 高宗 6年 1月 庚寅; 『元史』 卷208 列傳95; 『元高麗紀事』 1219(太祖 14)年條

32) 김윤정,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2017, 14~15쪽.

33) 『高麗史』 高宗 6年 1月 辛卯;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6年 1月

자작나무 껍질로 된 모자를 머리에 쓰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2尺이 넘는다. 대부분은 검은 모직물로 둘러싸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붉은색 비단을 쓰기도 하며 모자 끝이 거위나 오리같이 생겨서 고고(故故)라고 부른다. ...<sup>34)</sup>

이 기록은 몽골고원 서부를 지나며, 그 지역의 주거, 음식 생활과 두발 양식 등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특히 '옷은 무두질한 가죽이나 모피로 만들어 입고' 검은 모직물이나 붉은색 비단으로 둘러싼, 부유한 부인들의 모자인 '고고관(故故冠 boytay)'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눈에 띈다.

한편, 유목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중요성에 대해서<sup>35)</sup> 블라디미르초프는 루브룩과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㉞-3. "(부녀자의 직책은) 황차를 관리하고 황차 위에 장막을 장치하고 우유를 짜며 버터[소유(酥油)]와 치즈[견락(乾酪)=格魯特 xurud~gurud]를 만들고, 모피를 조제(調製)하며 아울러 [그것들을] 근사(筋絲)로 봉제(縫製)하는 일이다. 그녀들도 양초혜(涼草鞋)[신발], 단화(短靴)[양말] 그리고 그 밖의 의류를 짓고 ... [이 밖에도] 펠트(毛氈)를 급히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집[천막]을 덮는다." [루브룩] 이처럼 경제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몽골의 부녀자는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sup>36)</sup>

㉞-4. 고대 몽골의 부녀자는 유목민 가운데서 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집안에 가두어 외계와 격리시켜 둘 수 없다. 우리는 "당신들은 부녀자가 남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체의 매매[장사]를 하고 아울러 가정 경제를 경영 관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마르코 폴로의 말을 다시 한 번 되뇌 수 있다.<sup>37)</sup>

이어서 『서유기(西遊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㉞-5. [癸未年(1223) 음력 4월] 서북쪽 천여 리에 있는 검검주(儉儉州)에서는 좋은 철이 산출되고. 청서(靑鼠)가 많으며 또한 기장과 보리도 수확한다. 한인(漢人) 장인(匠人)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으며, 각종 비단들을 직조하고 있다. ...<sup>38)</sup>

34) 『長春真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268~269쪽. 從此以西, 漸有山阜, 人烟頗衆, 亦皆以黑車白帳爲家. 其俗牧且獵, 衣以韋毳, 食以肉酪, 男子結髮垂兩耳, 婦人冠以樺皮, 高二尺許, 往往以卓褐籠之. 富者以紅綃, 其末如鵝鴨, 名曰故故. 大忌人觸, 出入盧帳須低徊.

35) May T., "Commercial queens: Mongolian Khatuns and the Silk roa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26-1/2, 2016, pp. 89~106; de Nicola, B., "Women and the Economy of the Mongol Empire", *Women in Mongol Iran: The Khatuns, 1206-1335*, 2017, pp.130~181.

36)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 89~90쪽[Malenin A. I.(tr.), *Puteshestvie v' vostochnya strany*, S.-Pb, 1911, p. 78];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 기행』, 2015, 194쪽[제7장 여자들의 임무와 작업]. 러시아 번역본은 '제9장 여자들의 임무와 작업과 결혼'으로 번역하였다.

37) 같은 책, 89쪽[Minaev I. P.(tr.), *Puteshestvie Marco Polo*, S.-Pb., 1902, p. 87; Yule & Cordier, *The Book of Ser Marco Polo • I*, London, John Murray, 1903, p. 252]. 참고로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아내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남편과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193쪽. Minaev I. P.의 러시아 번역본은

<http://elib.shpl.ru/ru/nodes/8920-minaev-i-p-puteshestvie-marko-polo-per-starofr-teksta-spb-1902-zapiski-imp-rus-geogr-o-va-po-otd-niyu-etnografii-t-xxvi> 참조.

38) 『長春真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366~367쪽. '西北千餘里儉儉州, 出良鐵多靑鼠, 亦收床麥, 漢匠千百人居之織綾羅錦綺.'

이 기록은 오늘날 투바공화국에 속하는 검검주(儉儉州~검검주謙謙州, 캬캬치우트) 지역의 산출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철과 청설모[靑鼠]가 나며, 기장과 보리도 수확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농경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인 장인[漢匠]들이 많이 거주하며 각종 비단을 직조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포로로 잡혀 끌려온 농민들과 기술자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료 ㉞~㉠에서 대몽골국 성립 이후 몽골고원에서 유통된 물품을 살펴보면, 먼저 『집사』 「부족지」의 매 사냥, 흰 송골매, 『비사』 239절의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집사』 「칭기스 칸 기」의 1208년 겨울 메르키트의 재산과 말 떼와 가축 약탈 등 기사에 보이는 매,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이 있다.

장춘진인(長春真人)의 『서유기(西遊記)』에는 검은 수레와 흰 장막, 가축과 사냥, 무두질한 가죽옷, 모피, 짐승의 고기와 젓, 검은 모직물이나 붉은색 비단으로 싼 자작나무 껍질로 된 부인들의 모자[고고(故故)], 제호(醞醐 버터)와 동락(漣酪 응유), 방한 도구 등과 식량, 기장쌀, 보리(밭), 추수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부분 초원과 삼림 지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고고관(boytay)을 감싸는 붉은색 비단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다. 특히, 캬캬치우트(儉儉州)에서 나는 좋은 철과 청서(靑鼠), 기장과 보리가 언급되었으며, 많은 한인(漢人) 장인(匠人)들이 각종 비단들을 직조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으로 포로가 된 자들로 보인다.

대몽골국 초기에도 여전히 모피나 모직물이 주로 언급되지만, 여성의 ‘고고관’을 싸는 붉은색 비단과 검검주(儉儉州)에서 한인(漢人)들이 직조하는 각종 비단이 언급되고 있어 몽골초원과 인근 지역에서 견직물의 생산과 유통이 적게나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몽골국과 고려의 초기 관계에서 몽골 사신에게 준 선물 중에 수달피와 함께 명주와 베가 언급되고 있어 대몽골국에 필요한 견직물은 주로 정주지역에서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구르와 금나라, 탕구트[西夏]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교류 물품 중에서 직물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기록은 칭기스 칸이 ‘대몽골국’을 건설하고 공신들에게 상훈을 내릴 때인, 1209년경에 중앙아시아 동부의 위구르의 군주 이도오드(이드쿠드 亦都護)가 복속을 청하면서 조공품으로 언급된 다양한 물품의 종류이다.

㉠-1. (오이고드[위구르]의 이도오드가) “그대의 다섯째 아들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하고 아뢰어 왔다. 그 말에 칭기스 카한이 허락하여 답을 보내기를, “딸도 주마! 다섯째 아들이 되도록 하라! 금, 은, 진주, 자개, 금단(金緞 načid), 혼금단(渾金緞 dardas), 비단(toryad)을 갖고 이도오드가 오도록 하라!”고 하여 보내자, 이도오드가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며 금, 은, 진주, 자개, 비단, 금단, 혼금단, 피룩(ay urasun)을 갖고 와서 칭기스 카한을 알현했다. …’ [『몽골비사』 238절]

특히 위구르가 바친 물품으로는 금(altan), 은(münggü), 진주(subud), 자개(tanas),

금단(金緞 načid), 혼금단(渾金緞 dardas), 비단(toryad), 피륙(ayurasun)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크로드 상에 있던 오아시스 정주국가인 위구르 왕국의 재화를 엿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집사』 「칭기스 칸 기」에도 동일하게 보인다.<sup>39)</sup>

이어서, 다음은 위구르 군주가 칭기스 칸을 알현하면서 청원한 기록이다.

㉔-2. (칭기스 칸의) 어전에 위구르인들의 군주가 와서 배알하고, “... 멀리서 듣고 가까이 온 것을 (치하하여) 붉은 색의 외투와 황금 현대 고리를 제가 갖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했다.<sup>40)</sup>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에서 위구르 군주가 1209년에 사신을 보내 복속을 청한 후, 1211년 봄에는 직접 몽골고원으로 가서 칭기스 칸에게 아들이 되겠다고 청원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어서 금나라가 몽골에게 복속을 청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물품들을 살펴보겠다.

㉔-1. “(알탄) 칸(금나라 황제 宣宗)이 허락하신다면, 몽골의 칸에게 지금은 귀순하여 화의합시다! ... 그들의 칸에게 딸을 줍시다! 금, 은, **피륙(ayurasud)**, **재화(ed)**를 군인들에게 무겁게 내어줍시다! ...” 하고 제안하였다. 『몽골비사』 §248]

㉔-2. 알탄 칸이 옹강 승상(完顏承暉)의 이 말을 옳게 여겨, “그렇게 되도록 하라!”며 귀순하여 칭기스 카안에게 공주 이름의 딸(岐國公主)을 바치고, 금, 은, **피륙(ayurasud)**, **물화(ed tabar)**를 군인들의 힘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중도(中都)에서 내어 옹강 승상을 칭기스 카한에게 보내왔다. ... **피륙**, **물화**를 우리의 군인들이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싣고, 짐을 **깁(kib)**으로 묶고 행군했다. 『몽골비사』 §248]

이 기록은 1208~09년(1214~15년의 원정과 혼동되어 서술됨)의 일을 서술하면서, 칭기스 칸이 금나라를 공격하자 금나라가 화의를 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나라 측에서 황제의 딸[岐國公主]과 함께 대량의 금, 은, 피륙, 재화를 보냈는데, 심지어 ‘비단 깎’을 재화를 묶는데 사용할 정도로 질과 양이 엄청났다는 의미이다.<sup>41)</sup>

이어서 다음 기록에서는 칭기스 칸이 탕구트를 원정했을 때 탕구트의 국왕이 항복을 청하면서 바친 조공품 중에도 모직물과 견직물 등 직물이 언급되고 있다.

㉔-1. 그 출정한 김에 카신(河西) 사람들(=탕구트)에게 갔다. 향하여 가니 카신 사람들의 보르칸(국왕)이 귀부하여, “그대의 오른팔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하고 아뢰면서 차카 이름의 딸을 칭기스 카안에게 내주었다. ... “칭기스 카안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탕오드 사람들은 키 큰 데레순 풀(deresün)을 가리개로 하여 기른 많은 **낙타(temege)**를 내어 공물로 드리겠습니다. **털(örmege)**을 짜서 **피륙(ayurasun)**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놓는 **매(oyorqu šibayun)**를 조련하고, 수집하여 그 중에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며

39) 『집사』 2, 「칭기스 칸 기」, 253~257쪽.

40) 『집사』 2, 「칭기스 칸 기」, 272쪽.

41) 『元史』 「本紀」 第一, 太祖 九年 甲戌條, 17쪽.

살겠습니다!”하고 아뢰었다. 아뢰고 나서 약속을 지켜 탕오드 사람들로 부터 **낙타**를 징발하여 이루 다 물고 갈 수 없도록 가져다주었다. [『몽골비사』 §249]

여기서는 1209년, 칭기스 칸의 제1차 탕구트(西夏) 원정에 대한 서술과정에서, 탕구트의 보르칸(국왕)이 자신의 딸 차카를 바치고 많은 낙타, 털을 짠 **피륙**, 훈련시킨 매 등을 공납품으로 바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서술을 통해 탕구트 지방에 낙타와 피륙, 매 등이 많이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㉑-2. 칭기스 카한은 그 출정에서 **키타드** 사람들의 **알탄 칸**(금 황제)을 귀부시켜 **많은 피륙(olon ayurasun)**을 취하고, 카신 사람들의 보르칸을 귀부시켜 **많은 낙타(olon temeged)**를 취하였고, 칭기스 카한은 양의 해(1211년)의 그 출정에서 **키타드** 사람들의 아코타이라는 이름의 알탄 칸을 귀부시키고 탕오드 사람들의 일로코 보르칸을 귀부시키고, 돌아와 사아리 초원에 설명했다. [『몽골비사』 §250]

㉑-3. 알탄 칸은 중도에서 나올 때 중도 안에 카다를 **료소(留守)**로 삼아 맡기고 갔다. 칭기스 카한이 중도의 금, 은, **재화(ed)**와 **피륙(ayurasun)**을 점검시키려 **웅구르** 집사장, 아르카이 카사르, 시기 코토코를 보냈다. 이들 셋이 온다고 카다가 **금을 섞어 짠(altatai)**, **무늬를 넣은(hartai) 피륙(ayurasu)**을 갖고 중도에서 나와 마중했다. [『몽골비사』 §252]

㉑-4. 그때 칭기스 칸은 **쿤주(Qūnjū, 桓州)**라는 곳에 있었는데, 타타르 종족 출신의 (시기)쿠투쿠 노얀과 **웅구르** 바우르치와 **하르카이 카사르** 등 세 **삶**을 보내서 중도 시 안에 있던 **알탄 칸의 재고와 재물**을 갖고 오도록 했다. 알탄 칸이 그 도시에서 떠날 때 **카일류와 쿠이**라는 두 **아미르**를 신뢰하는 대리인으로 **재산과 재고와 물자**를 관리하도록 남겨 두었다. … 이 두 사람과 다른 **아미르**들은 **금실로 짠 의복과 보물**들을 갖고 **상술한 아미르**들을 배알했다. … 42)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들은 1215년 경, 칭기스 칸이 중도(中都)를 공격하자 알탄 칸[금 황제]이 도망가면서 카다에게 유수(留守)직을 주어 맡겼는데, 칭기스 칸이 부하들을 시켜 중도의 재화를 점검시키려 보낸 상황이다. 당시 금나라 수도인 중도에는 금, 은, 재화, 피륙이 많이 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㉑-5. … 몽골 종족들은 도시들에서는 멀리 떨어진 초원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직물과 의복과 카펫** 등은 그들에게 특히 귀했고, 그들과의 교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소문은 매우 널리 퍼졌다. 그런 까닭에 부하라에서 세 명의 상인이 **金絲 織物, 잔다니치, 면포** 등을 비롯해 그 밖에도 그 종족들에게 필요하고 알맞다고 보이는 **각종 물품**들을 갖고 그 지방으로 향했다. … “우리는 이 직물들을 **군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칭기스 칸은 그들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 “**금실로 짠 옷**들은 모두 금 1발리시를 주고, **잔다니치(와) 면포** 두 벌에 은 1발리시를 주라”고 했다. … 43)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을 보면, 칭기스 칸이 실크로드를 통한 오아시스 도시와의 통상교역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sup>44)</sup> 즉, 몽골고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들을

42) 『집사』 2, 「칭기스 칸 기」, 288~289쪽.

43) 『집사』 2, 「칭기스 칸 기」, 308~310쪽; 티모시 메이, 앞의 책, 165~167쪽.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몽골유목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㉞-6. 해가 지는 곳에서 뜨는 곳에 이르기까지 적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투부드(티베트) 개들을 부추겨 보내시면, 저희들에게 천지가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적의 백성을, 금, 은, **피룩(ayurasun)**, **물화( tabar)**, 백성과 속민을 그대에게 가져오겠습니다.’ [『몽골비사』 §260]

이 기록은, 1218년부터 시작된 칭기스 칸의 중앙아시아 사르타울(호레즘 왕국) 원정 과정 중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몽골군의 목적이 재화와 사람을 약탈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사료들을 보도록 하자.<sup>46)</sup>

㉞-1. 고종 8(1221)년에 다시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이 와서<sup>47)</sup> 고려왕이 대관전(大觀殿)에서 조서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은 몽골 황태제(皇太弟)의 군지(鈞旨)를 전하고, **수달피[獺皮]** 10,000장, **가는 명주[細紬]** 3,000필, **가는 모시[細苧]** 2,000필, **솜[綿子]** 10,000근, 용단먹(龍團墨)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만장, 자초(紫草) 5근, 홍화(紅花), 남순(藍筍), 주홍(朱紅) 각 50근, 자황(雌黃), 광칠(光漆), 동유(桐油)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저고여(著古與) 등이 군지를 전달한 다음 대관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자 품속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왕 앞에 던져버렸는데, 모두 작년에 주었던 **거친 명주[麤紬布]**였다. 그리고는 결국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원수(元帥) 잘라[札刺]와 포흑대(蒲黑帶)의 서한을 한 통씩 꺼내놓았는데 모두 **수달피, 가는 명주, 솜** 등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48)</sup>

㉞-2. 고종 11(1224)년 1월과<sup>49)</sup> 같은 해 11월에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 10명이 다시 사신으로 와 함신진(咸新鎭)에 이르렀다가<sup>50)</sup> 다음 해(1225년) 1월에 몽골 사신이 서경(西京)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만 나라의 예물(國贖)인 **수달 가죽[獺皮]**만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비단[紬布]** 등의 물품은 모두 들에 버리고 갔는데, 도중에 (저고여가) 도적에게 살해당하게 되자 몽골에서 도리어 고려를 의심하여 마침내 국교가 끊어지게 되었다.<sup>51)</sup>

몽골과 고려의 초기 교류에서, 몽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물품을 ‘공물’로 요구하여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비단 등 견직물과 솜 등 면직물, 심지어 수달피 등 모직물 [모피]도 들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4)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1997;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 研究』, 2016, 139~161쪽.

45) Thomas T. Allsen, 앞의 논문, 1989, pp. 83~94.

46) 고려와 원과의 관계의 변화와 복식문화의 변화상 전반에 대해서는 김윤정,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2017; 이호정, 「사료를 통해 본 고려와 몽골(원)의 직물 교류」, 제3회 유라시아・몽골센터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몽골학의 종합적 검토 및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연구 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2023. 11. 9.(미건)을 참고하십시오.

47) 『高麗史』 高宗 8年 8月 己未; 『元高麗紀事』 太祖 16(1221)年; 『元史』 「外夷傳」

48) 『高麗史』 高宗 8年 8月 甲子;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8年 8월

49) 『高麗史』 高宗 11年 1月 丙午; 高宗 11年 一月 癸丑;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1年 1月

50) 『高麗史』 高宗 11年 11月 乙亥;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1年 11月; 『元高麗紀事』 太祖 19(1224)年

51) 『高麗史』 高宗 12年 1月 癸未;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2年 1月

㉞-1. 힌두스의 증부에 이르도록 추격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회군하면서 힌두스의 변방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낙타(temeged)**, 수많은 **거세 염소들(serkes)**을 가져왔다. [『몽골비사』 §264]

기록이 있는데, 이는 호레즘 왕의 아들 잘랄 앓 단이 인더스 강을 넘어 도망치자, 몽골군이 회군하면서 그 지방 백성들을 약탈하고 낙타와 거세 염소들을 빼앗아 오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㉞-2. 아샤 감보가 나서며, “모욕하는 말들은 내가 했다. 이제라도 너희들 몽골이 싸움을 배웠으니, 싸우고자 한다면 나는 알라샤이(賀蘭山)에서 목영하며, **모직 장막(terme ger)**이 있고, **낙타 짐(temege-iyen ačiya)**을 갖고 있다. 알라샤이를 행해 내게 오라! 거기서 싸우자! 금, 은, **피륙(ay urasun)**, **재화(tabar)**가 필요하면 에리 카야(寧夏), 에리 제우(西涼)를 목표로 해라!”하고 말을 전해 보냈다. [『몽골비사』 §265]

위 기록은 칭기스 칸이 호레즘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돌아오자마자, 중앙아시아 원정에 군대를 내지 않은 탕구트를 1226~27년에 응징하러 갔다가 병에 걸린 상황에서, 아샤 감보가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청하는 장면이다. 당시 탕구트가 많이 갖고 있던 재화의 품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㉞-3. 칭기스 칸은 유언을 모두 마치고 아들들을 보낸 뒤 낭기야스 방면으로 향했는데, 그 도시의 군주들이 차례로 찾아와 복속했다. 주르체와 낭기야스와 탕구트 지방들의 경계 중간에 있는 류판산(六盤山)에 도착했을 때, 주르체의 군주가 “칭기스 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에게 선물을 들려 파견해서- 그 가운데에는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우리는 복속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칭기스 칸은 “귀에 구멍을 뚫은 사람에게는 모두 진주를 주라”고 명령했다.<sup>52)</sup> [『집사』 「칭기스 칸 기」]

위 기록은 칭기스 칸이 다시 원정길에 올라 금나라 근처에 오자, 금나라 황제가 칭기스에게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를 보내 복속을 청해왔고, 칭기스는 이 진주를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모두 사여해 준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칭기스 칸은 전리품이나 공납품을 자신보다도 부하들에게 사여해 줌으로써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㉞-4. 칭기스 카한이 차소토 산 위에서 여름을 나고, 아샤 감보와 산에 올라 저항하던 **모직 장막(terme ger)**을 가진, **낙타 짐(temege-iyen ačiya)**을 가진 탕오드들을 군대를 보내 의도한 바대로 절멸할 때까지 약탈했다. 거기서 보오르초와 모칼리에게 “힘이 자라는 데까지 갖도록 하라!”고 상을 내렸다. [『몽골비사』 266절]

이 기록은 결국 칭기스 칸이 1227년에 저항하는 탕구트의 아샤 감보를 섬멸하고 재화를 약탈하고, 부하 장수인 보오르초와 모칼리에게 전리품을 취하도록 명령을 내

52) 『집사』 2, 「칭기스 칸 기」, 385쪽.

리는 장면이다.

㉔-5. 칭기스 카한이 차소토에서 이동하여 오라카이 성에서 묵고, 오라카이 성에서 이동하여 두르메 게이 성(靈州城)을 깨뜨리고 있을 때 보르칸이 칭기스 카한을 알현하러 왔다. 보르칸은 황금 불상을 비롯한 금은 기명을 아홉 가지로 아홉 벌씩, 동남동녀 각 아홉 명, 거세마(aytas)와 낙타(temeged) 각 아홉 마리 등 온갖 것을 아홉 가지씩 아홉 색으로 갖추어 알현하였다. 보르칸을 문을 닫은 채 알현케 했다. 『몽골비사』 §267]

이 기록은 탕구트의 군주였던 보르칸이, 1227년 칭기스 칸에게 항복을 청하는 과정에 그가 가져온 공납품이 열거되어 있다.

이상 사료 ㉔~㉔에서, 위구르가 칭기스 칸에게 복속을 청할 때 바친 직물류는 『비사』 238절에는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비단, 피륙**이 나오며,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이득 쿠트(亦都護)가 상으로 하사해달라고 청한 **붉은 색 외투** 등이 보인다. 이 물품들을 보면, 실크로드 상의 정주국가인 위구르왕국의 재화가 아주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

금나라 역시 몽골에 항복을 청하며 다양한 것을 바쳤는데, 『비사』 248절에는 **피륙, 물화** 등이, 252절에는 **피륙, 금을 섞어 짠 피륙, 무늬를 넣은 피륙** 등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금실로 짠 의복, 보물들**이 보인다.

탕구트[西夏]가 몽골에 복속을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물품들이 언급되는데, 『비사』 249절에는 탕구트가 보낸 **많은 낙타, 피륙**이, 265절에는 **모직 장막, 낙타 짐, 피륙**, 266절에는 **모직 장막, 낙타 짐**, 267절에는 탕구트 국왕 보르칸이 칭기스 카한에게 **거세마, 낙타** 등을 바치며 알현했다고 기록하였다.

호레즘과 몽골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과 전쟁 등에 대한 기록에서도 수많은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몽골 초원민에게는 귀한 **여러 종류의 직물과 의복과 카펫** 등이, 칭기스 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려고 부하라 상인이 가져온 **金絲 織物, 잔다니치**,<sup>53)</sup> **면포, 각종 물품들, 금실로 짠 옷과 진귀품들**, 그리고 『비사』 260절에 **피륙, 물화** 등이 보인다. 그리고 264절에는 힌두스의 수많은 **낙타**, 수많은 **거세 염소들**을 약탈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몽골국 성립 이후에는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하여<sup>54)</sup> 몽

53) '잔다니치(zandanīchī)'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인 부하라의 잔다나(Zandana)라는 마을에서 생산된 직물을 말한다. Dode Z., "'Zandanīr Silks': The Story of a Myth", *The Silk Road* 14, 2016, pp. 213~222; de Nicola B., *Women in Mongol Iran: The Khatuns, 1206-1335*, 2017. 몽골 시대 이슬람 지역에서 생산된 직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된 전반적인 상황에는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1997을 참고하십시오.

54) 이개석, 「元代の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1996;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 8-2, 2019; di Cosmo N., "Why Qara Qorum? Climate and Geography in the Early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21(2014-2015), 2015, pp. 67~78.

골고원으로 아주 다양한 물품과 재화들이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직물류 또한 값비싸고 화려한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金絲 織物, 잔다니치, 비단, 금실로 짠 의복, 금을 섞어 짠 피륙, 무늬를 넣은 피륙, 붉은색 외투, 모직 장막, 면포 등이 몽골고원으로 유입되었다.

한편 대몽골국 성립 이전 사료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가축과 동물[모피]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겨우 탕구트와 힌두스에서 약탈한 낙타와 거세마, 거세 염소, 매 정도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칭기스 칸이 대몽골국을 성립하고자 했던 요인 중 하나로, 주변 세력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통해 몽골고원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추구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동시대 사료에 보이는 다양한 직물류의 유통 양상과 그 변화를 통해 몽골초원의 유목세계와 외부 정주세계와의 교류상을 살펴보았다.

칭기스 칸은 이런 몽골고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교환을 통해 유목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유목민의 통합이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칭기스 칸은 몽골고원의 유목민들을 통합하여 대몽골국을 세우고 주변 정주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무역 상인들이 몽골제국의 통치 하에 안전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몽골고원으로 몰려들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노력하였다. 뒤를 이은 우구데이 카안 시기에는 다양한 이방인들이 새로 정비한 '역참(驛站, jamči)'망을 통해 새로운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으로 몰려들었다.<sup>56)</sup>

#### 참고문헌

##### 1. 사료

55) 몽골고원과 주변 정주지역 사이에 물품이 유통된 대몽골국 시기 역참로에 대해서는 김성수,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잠치(jamči)」, 『몽골학』 25, 2008, 236~245쪽; 심호성, 「몽골帝國期 東部 중앙아시아 驛站 交通로의 변천」, 『동양사학연구』 118, 2012, 90~97쪽을 참조하시오.

56) 칭기스 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와 몽케 카안 시기의 동유라시아 물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と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70, 1989;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2022, 101~139쪽을 참조하시오.

『漢書』

- 저자미상, 『몽골비사(元朝秘史)』(유원수 역주), 파주, 사계절, 2004.
- 宋濂 等 撰, 『元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李志常, 『長春真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 趙珙, 『蒙鞑備錄』(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 彭大雅·徐霆, 『黑鞑事略』(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 張德輝, 「[嶺北]紀行」, 王惲, 『秋澗先生大全文集』 卷一百, 「玉堂嘉話」卷之八, 5b~9a.  
(姚從吾 校注, 『姚從吾先生全集』 第七集, 臺北, 正中書局, 1982)
- 라시드 앳 딘, 『집사·1』 「부족지」(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2.
- , 『집사·2』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3.
-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까치, 2015.

## 2. 연구서

-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
- ,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파주, 사계절, 2016.
- 라츠네프스키, 『칭기스 칸』(김호동 옮김), 지식산업사, 1992.
- 모건, 『몽골족의 역사』(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 미할 비란 외 편저, 『몽골제국, 실크로드의 개척자들』(이재항 옮김), 책과함께, 2021.
-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주채혁 譯),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윤정,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연세대학교 대학원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 정재훈, 『흥노 유목제국사, 기원전 209~216』, 파주, 사계절, 2023.
- ,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파주, 사계절, 2016
- ,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학과지성사, 2005.
-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권용철 옮김), 파주, 사계절, 2020.
-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6.
- de Nicola B., *Women in Mongol Iran: The Khatuns, 1206-1335*,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7.

## 3. 논문

- 강인욱,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 자료로 본 흥노와 동아시아 -흥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5, 중앙아시아학회, 2010.

- ,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100, 2018.
-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 8-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
- 김성수,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잠치(jamči)」, 『몽골학』 25, 한국몽골학회, 2008.
- 김장구, 「대몽골국 성립 전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중앙아시아연구』 26-2, 중앙아시아학회, 2021.
- ,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한국몽골학회, 2022.
-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고려-몽골 간 물품 이동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5, 이화사학연구소, 2022.
- 설배환,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 경제 정치 네트워크-」, 『중앙아시아연구』 26-2, 중앙아시아학회, 2021.
- 심호성, 「몽골帝國期 東部 중앙아시아 驛站 交通로의 변천」, 『동양사학연구』 118, 동양사학회, 2012.
- 이개석, 「몽고帝國 성립기 商業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 9, 경북사학회, 1986.
- , 「元대의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ト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70, 東京, 東洋文庫, 1989.
- 原山煌, 「モンゴル狩獵考」, 『東洋史研究』 31-1, 京都, 東洋史研究會, 1972
- Allsen, Thomas T.,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2-2, 1989.
- di Cosmo N., “Why Qara Qorum? Climate and Geography in the Early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21(2014-2015), Wiesbaden, Otto Harrassowitz Verlag, 2015.
- Dode Z., ““Zandanīr Silks”: The Story of a Myth”, *The Silk Road* 14, 2016.
- May T., “Commercial queens: Mongolian Khatuns and the Silk roa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26-1/2, 2016.
- Münküjev N. Ts., A Mongolian Hunting Practice of the 13th Century and the Buryat Terms Zeegete aba and Aba Khaidag, *Tractata Altaica*(Heissig W. et. al.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76.
- Yihao Qiu, “Gift-Exchange in Diplomatic Practices during the Early Mongol Period”, *Eurasian Studies* 17, Leiden, Brill, 2019.



【제3발표】

##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靑布와 藍布를 중심으로

임경준(동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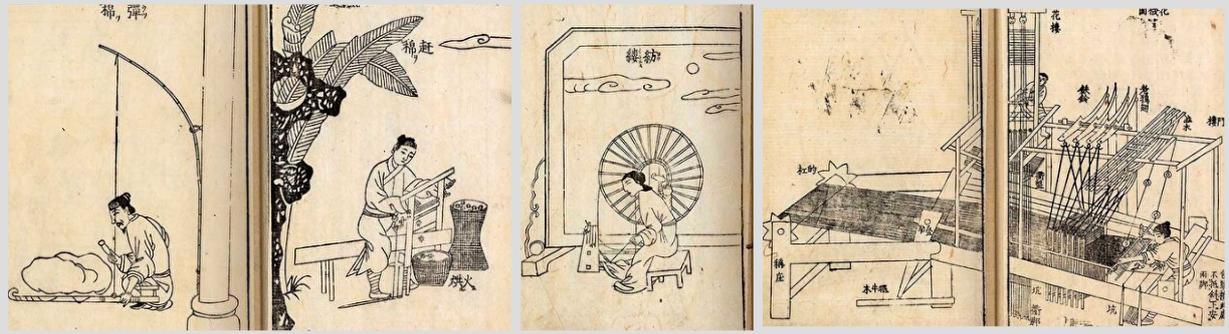
---

착상의 계기

-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명말 면포의 외국 전파
-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연구토론회  
동유라시아 지역 직물의 생산과 유통



#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 靑布와 藍布를 중심으로

임경준(동국대 문화학술원)

## 착상의 계기

### ◇ 문제의식

- 목적: 壬辰戰爭(1592~98)을 계기로 조선으로 유입된 중국산 면포인 靑布·藍布는 명대 중국에서 어떠한 물품이었으며 만주와 조선 사이에서 어떠한 무역품이었는가.
- 구성: 靑布·藍布로 재조명하는 명말의 만주·조선 관계
  - ; ① 명대의 면포 명칭과 분류, ② 중국산 면포의 유통, ③ 만주·조선 무역과 면포

### ◇ 중국산 면포의 연구 동향

- ① 사회사·경제사 …………… 자본주의 맹아론의 기반으로 명대 면직물 산업(~80년대)
  - ② 무역사·관계사 …………… 전근대 동아시아 무역의 핵심 상품으로서 면직물(90년대~)
- ⇒ 어디서 만들어졌나? 무슨 명칭으로 불렀나? 어떻게 무역되고 어떻게 쓰였나?

## 면포란 무엇인가

### ◇ 면포(綿布·Cotton)

- 면화에서 추출한 무명[木綿]으로 짠 직물
- 다른 식물류와 비교할 때 생산성과 경제성에서 탁월한 옷감
-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된 필수 재화



### ◇ 명대의 면포

- ① 농업을 보조하는 가내수공업 생산품 → ② 국가 수취의 대상 → ③ 대외 교역품

### ※ 명칭 차이

- 명조 : 綿布 = 布
- 조선 : 綿布 = 木  
麻布 = 布



3

## 면포의 제작



면화(아욱목 아욱과)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



씨앗을 감싼 흰 털 부분을 섬유로 사용



섬유와 씨를 나누어 짜는 작업, 紡績



완성된 면포로 다양한 활용

4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木綿布는 村과 鎭마다 각자 명칭을 붙이고 있어 다 분별할 수 없다.”

崇禎『松江府志』권6, 물산조

- 명대에는 면포의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이 특징
- 원재료, 제조법, 색상, 문양, 크기, 생산지에 따라 분류 기준이 제각각  
ex) 絲布, 靑布, 番布, 三梭布, 松江布 → 三梭木棉布·三紗木棉布
- 다만 고급 면포의 생산지는 강남 델타 지역에 한정 → 명말 이후 지역별 자립화  
ex) 四川, 廣東, 浙江, 福建 등

5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周忱의 강남 델타 세제 개혁

- 강남 델타의 핵심인 蘇州府와 松江府의 무거운 세율  
“蘇松二府田賦之重”『日知錄』권10
- 1430(宣德 5)년 工部侍郎 周忱의 江南巡撫 파견
- 강남의 重稅에 대해 平米法을 비롯한 세제 개혁 실시
- 1433(宣德 8)년 개혁의 일환으로 면포의 折納을 허용

면포의 세수 납부



면포 생산의 활성화와 규격화



周忱(1380-1453)

6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 松江府에서 생산하는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cf) 三升布  
→梭와 升은 동일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음

### ◇ 三梭布의 가치(1)

- 『大明會典』 권38, 廩祿  
: 又令以甲字庫三梭布折在京文武官俸每布一疋准絹一疋
- 『憲宗實錄』 권205, 成化 16년 7월 병신조  
: 然三梭一疋極細者不過直銀二兩 / 粗潤綿布直銀三四錢  
⇒ 일반 면포와 달리 비단에 견줄 수 있는 고급 면포



周忱(1380-1453)

7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 松江府에서 생산하는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cf) 三升布  
→梭와 升은 동일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음

### ◇ 三梭布의 가치(2)

- 明·陸容, 『菽園雜記』 권1:  
撰嘗聞尙衣縫人云, 上近體衣, 俱松江三梭布所製.
- 康熙『松江府志』 권53, 遺事  
明時, 御用近體衣, 皆松江三梭布.  
⇒ 명조 궁중에서 활용하는 어용 면포로서 고급



周忱(1380-1453)

8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三梭布의 염색, 靑布와 毛靑布

“靑布는 애초 蕪湖에서 만들어져 긴 세월 유행하였다. 청색즙으로 문질러서 청색 빛깔을 내는 방법으로 만든 것인데, 변방과 외국에서 모두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인정이란 것이 오래되면 싫증이 나기 마련이라 毛靑이 근래에 출현하였다. 松江府에서 나는 좋은 면포를 짠 청색으로 염색하여 만들어 청색즙으로 문지르지 않고 바람으로 말려 豆漿水를 섞은 膠水에 한 차례 걸러 낸다. 미리 標礪이라는 좋은 靑黛를 비축해 두고 거기에 넣어 얇게 염색한 뒤에 바로 꺼내면 붉게 타오르는 색이 은은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면포가 별안간에 유행하게 된 것이다.”

『天工開物』卷上, 「附染毛靑布色法」

- 靑布: 安徽省 蕪湖에서 만들어진 면포
- 毛靑布: “松江府에서 나는 좋은 면포”를 염색 = 三梭布 ⇒ 외국으로는?

9

## 2. 명말 면포의 외국 전파

### ◇ 중국산 면포의 외국 전파: 몽골의 경우

- (萬曆)二年, ……時俺答既封吉能, 亦修貢受約束, 因貢爲市. 中國以梭布皮物易虜馬, 虜亦利漢財物, 交易不絕, 胡越一家.

『全邊略記』권2

- 每年互市額馬一萬四千五百匹, 其款有八 ……曰梭布, 馬每匹梭布四十疋, 有靑布者, 有無靑布者, 共二等.

『三雲籌俎考』권2, 封貢考:

※ 몽골과의 互市에서 주요 교역품으로 쓰이고 있던 것이 확인됨

10

## 2. 명말 면포의 외국 전파

### ◇중국산 면포의 외국 전파: 만주의 경우

7월에 자식들과 처를 빼앗긴 王一屏, 戴集賓, 金玉和, 白奇策이라는 네 千總과 戴一位라는 한 守堡가 20여명을 이끌고 그들의 자식들과 처를 찾으러 도망해 오자 경기연 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하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나라가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것을 듣고 찾으러 온 것이로다!”라고 말하며 개원성에서 투항해 온 아부투 바투루(Abutu Baturu)에게 사람 1백명, 마소 1백마리, 양 1백마리, 낙타 5마리, 은 1백냥, 비단 20필, 毛靑布(mocin samsu) 2백필을 주고, 千總 직의 여섯 사람에게 사람 50명, 마소 50마리, 양 50마리, 낙타 2마리, 은 50냥, 비단 10필, 모청포 1백필을 각각 주고, 守堡·百總 품급의 사람에게서는 사람 40명, 마소 40마리, 양 40마리, 낙타 1마리, 은 40냥, 비단 8필, 모청포 80필을 주었다.

『만주실록』 권5, 천명 4(1619)년 7월조.

※ 만주에서는 항복한 장수에게 하사하는 물품으로 일찍부터 활용됨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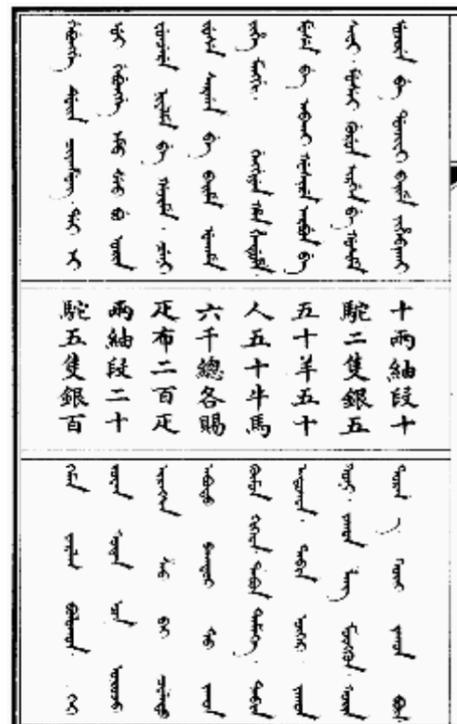
## 2. 명말 면포의 외국 전파

### ◇毛靑布의 만주어 표기

- 『만주실록』 = (만문+한문+몽문) 三體合璧
- 만문 : mocin samsu ↔ 한문 : 布
- 동일 기사를 수록한 『태조실록』 한문본은 모두 ‘布’
- ← 『태조실록』 만문본의 경우 모두 ‘mocin samsu’

### ◆『五體清文鑑』과『大清全書』의 분류

- mocin samsu: 毛靑布
- lamun samsu: 藍扣布 → 藍布
- samsu: 翠藍布  
; 三梭布



12



### 3.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 ◇만주·조선 무역의 계기, 정묘호란(1627)

- 1627년 1월 만주 後金의 조선 침공
- 1627년 3월 만주·조선의 강화 체결
- 만주·조선의 강화 조건
  - ①예물 진헌, ②사신 파견, ③開市 개최, ④양국간의 상호 불침, ⑤국경 준수, 開市의 경우 강화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후 추가된 조항
- 병자호란(1637~38) 전까지 양국 관계에서 중국산 면포는 어떻게 무역되었나?
  - ①예물 진헌, ②사신 파견, ③開市 개최

### 3.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 ◇예물로서의 靑布

- : 만주에 사신을 파견할 때에 보내는 예물
- 강화 직후 조선이 만주에 발송한 예단품목
- 靑布를 필두로 면포류의 비중이 압도적
- 이외의 항목은 단목을 제외하면 수량적인 의미는 제한적
- ; 만주에서 온 사신에 대한 예물
  - 八旗 旗王이 파견한 사자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월 2일(계축)  
: 청포(靑布) 19필, 백목면(白木綿) 8필을 증정
  - 아주후(Ajuhū)와 박중남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8일(갑인)  
: 청포(靑布) 100필과 단자(段子) 1필을 증정

白綿紬 50필	長劍 5병
白苧布 50필	短劍 5병
紅色布 50필	長槍 2병
靑色紬 50필	弓子 1장
靑布 400필	弓袋 1부
豹皮 8장	馬 2필
白綿紙 80권	鞍具 2부
油氈 4부	丹木 100근
花席 15장	胡椒 8두
油扇 100병	大箭 10부

조선이 만주에 발송한 예단품목  
(『朝鮮國來書簿』 천총원년 7월 10일조)

### 3.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 ◇ 무역품으로서의 靑布

: 일반적인 무역

- 청측 사신이 은자 1천여 냥으로 청포(靑布)와 각색비단 그리고 가죽과 종이 등을 구매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2월 27일(계축)

: 강제적인 무역

- 청포 1만 9천여필을 요구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12월 10일(병신)
  - : 청측 사신이 인삼 4백 80여 근에 대가로 청포(靑布) 1만 9천여 필을 요구
- 청포 16만 5,200필을 요구 『승정원일기』 책30, 인조 8년 5월 27일(병오)
  - : 조선측은 1만 910통을 준비
  - : 청측의 협박으로 5396통을 더 보내 최종적으로 125,200필 발송

### 3. 명말 만주·조선의 면포 무역

#### ◇ 포로 속환 대응으로서의 靑布

전일 도주해 간 사람으로 곡호(曲虎)에게 잡힌 세 명과 투로세(投老世)에게 잡힌 일곱 명에 대해 값을 시장에서 매매 가격대로 하되 상품은 소 한 마리 · 청포(靑布) 백 필, 중품은 청포 백 필, 하품은 소 한 마리 혹은 청포 6 · 70필로 등급을 나누어 값을 치르도록 하라는 칸의 부탁이 있었소. …… 박경룡과 되풀이하며 힐난을 해서 마침내 한 사람당 청포 65필로 정하여 쌍방이 문서를 작성하고 파했습니다.

『속잡록』 권2, 무진년 상 승정(崇禎) 원년, 인조 6년(1628년)

- 포로 속환 대응으로서 청포가 활용됨
  - 상품: 소1마리 + 청포 100필 / 중품: 청포 100필 / 하품: 소1마리 or 청포 60~70필
- 박경룡이 교섭한 결과 1인당 청포 65필의 비율로 결착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4월 3일(갑오)
- 강화 직후 청포 1,000필을 별단으로 포로 속환에 사용 『승정원일기』 책19, 인조 5년 10월 11일(갑진)



감사합니다

중국 라오닝성 환런현 오녀산성

【제4발표】

雪域의 스승이 초원의 칸에게:  
티베트 식물 氇氇(phrug) 연구

최소영(동국대)

---

序論

I. 番僧의 조공: 명대의 기록

II. 달라이 라마의 선물

結論



# 雪域의 스승이 초원의 칸에게: 티베트 식물 穉穉(phrug) 연구

최소영(동국대)

序論  
I. 番僧의 조공: 명대의 기록  
II. 달라이 라마의 선물  
結論

## 序論

13세기 몽골 초원과 그 너머의 수많은 지역과 국가들을 차례로 세력 하에 넣어가던 몽골은 마침내 중앙티베트에도 손을 뻗었다. 1240년, 당시 대칸이던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Köten, 1208-1251)이 보낸 군대가 중앙티베트(dbus gtsang, 烏思藏)로 진입해 왔고 정찰전 정도의 규모이던 이때의 전투에서 약 500명의 티베트 승려가 살해되었다. 전투 후 관례대로 몽골은 자신들에게 공식적인 신속을 표할 상대측의 대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티베트는 토번제국(617-842) 이래 이른바 “분열기”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중앙집권 세력이 없었다. 이에 티베트의 僧俗은 논의를 거쳐 사까(sa skya) 지역의 교파인 사까派(sa skya pa)의 座主 사까 뽀디따(sa skya paNDi ta kun dga' rgyal mtshan, 1182-1251)가 대표자로 몽골로 갈 것을 결정했다. 사까에서부터 천천히 이동한 사까 뽀디따는 쿠텐이 있는 涼州로 가서 그를 만났고, 곧 티베트의 승속 수령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그는 몽골에게 확실한 복속을 보여주기 위해 공물을 바쳐야 함을 힘주어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치는 공물로 금, 은, 상아(glang po che'i mche ba, 象牙), 큰 진주알(mu tig rdog po che ba), 주홍 염료(mtshal), 꼭두서니 염료(btsod), 목향(ru rta, 木香), 코끼리 담즙(gi wang), 호랑이(stag), 표범(gzig), 초표(gung, 草豹) 세 종류 [가죽], 수달(sram) [가죽], “티베트 남(bod snam)”, “위(dbus) 지역의 질 좋은 특(dbus phrug bzang po)” 등이라면 여기에서 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sup>1)</sup>

1) 'dab nor la gser/ dngul/ glang po che'i mche ba/ mu tig rdog po che ba/ mtshal/ btsod/ ru rta/ gi wang/ stag/ gzig gung gsum/ sram/ bod snam/ dbus phrug bzang po/ 'di na de tsho dga' bar 'dug/ ('Jam mgon A myes zhabs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Dzam gling*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사료 기록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위 목록의 물품들을 티베트인들이 실제로 몽골 조정에 바쳤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상아나 진주 등은 티베트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때문인지 사까 뽀디따는 서신 말미에 “대개 재화로 여기(몽골)에서는 중요하지 않아도 [티베트] 각지에서 어떠한 것이든 좋은 재화가 오는 것으로 족합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위에 열거된 물품들 중 남(snam)이나 툽(phrug)은 분명히 티베트의 주요 생산품이었고 이후 티베트와 몽골 간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므로 선물의 형태로든 조공의 형태로든 大都의 대칸과 황실에 전해졌을 것이다.<sup>2)</sup>

특히 툽은 양털이나 야크털로 짠 티베트의 전통적인 모직물인데 티베트에서 보리 농사 등을 짓는 농경민들은 돌과 흙으로 된 건물에 거주했지만 유목민들은 일찍부터 툽으로 짠 큰 천막에 거주했다. 주로 야크털로 짠기 때문에 색은 검은 색이었고 형태는, 둥글고 흰 半球 모양의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게르나 유르트와 달리 텐트 모양이었다. 티베트는 면직물이 생산되지 않았고 견직물은 더욱이 없어 모직물 생산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셰르마(Tib. sher ma?)나 테르마(Tib. ther ma) 등도 있었으나 툽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였고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는 몽골제국의 칸에게 보내자고 했던 툽이 그 이전과 이후에 티베트와 기타 지역의 사료에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 番僧의 조공: 명대의 기록

주목할 것은 이 티베트산 모직물이 명대의 한문 사료에 다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明會典』은 중앙티베트(dbus gtsang, 烏思藏)가 명 황제에게 “조공품”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西番은 옛날 吐番이며 元代에 軍현이 되었다. 홍무 초 그들의 옛 직으로 말미암아 오사장 번승들에게 闡教王, 闡化王, 輔教王, 贊善王 칭호를 내려 백성을 통합하였다. 또한 護教王, 大乘法王, 大寶法王이 있으니 7 왕이 있었고 모두에게 銀印을 수여하고 매년 혹은 격년으로 조공하게 하였다. ... 공품으로는 畫佛, 銅佛, 銅塔, 舍利, 各色足力麻, 各色鐵力麻, 各色氍毹, 珊瑚, 犀角, 左髻, 毛纓, 酥油, 明盔, 明甲,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Delhi : Tashi Dorji ed., Dolanji, H.P. : distributor, Tibetan Bonpo Monastic Centre, 1975, pp.160:6~162;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pp.41-47) 위(dbus)는 중앙티베트에서 라싸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원, 명대에는 烏思, 청대에는 발음이 위로 바뀌어 衛로 적혔다.

2) 사까 뽀디따의 서신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저작이 高僧의 전기이므로 그의 생애를 기록하다 보니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며 티베트 저작들은 세속의 일을 적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특히 달라이 라마 이전 시기는 더욱 그러하다.

刀, 그리고 劍이 있었다.<sup>3)</sup>

앞에서 본대로 원대는 사까파가 몽골의 지원으로 정치와 종교 양 분야에서 티베트를 다스렸는데 명대는 정치적으로 팍모두派(phag mo gru pa)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적으로는 여러 교파가 힘을 겨루며 병립하고 있었다.<sup>4)</sup> 위 『明會典』의 기록은 바로 명이 元代처럼 티베트를 장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교파의 좌주들에 대한 王 칭호 수여와 “조공” 관계를 통해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sup>5)</sup> 그리고 이에 응한 중앙티베트에서는 명 조정에 佛畫나 佛像, 탑, 사리를 비롯한 불교 관련 물품을 비롯하여 산호, 犀角, 버터, 투구와 갑옷, 검과 도 등을 “조공으로” 보내고 있다. 여기서 여러 색의 足力麻와 鐵力麻라는 것은 앞에서 본 세르마와 테르마 모직물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색의 “氍毹”는 바로 특(phrug)이다. 특은 그 발음이 근대까지도 “프루(ㄱ)”이었고 따라서 “프루” 발음의 음차로 기록된 것이다. 이전에 『舊唐書』는 양털이나 야크털로 만든 티베트인들의 거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 백성 중 혹자는 목축을 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성곽이 꽤 많다. 그 나라의 도성을 邏些城이라 부른다. 지붕은 모두 평평하며, 높은 것은 수십 척(尺)에 이른다. 귀인은 大 氍毹에 거주하는데 이를 “拂廬”라고 한다.<sup>6)</sup>

여기의 “拂廬”가 바로 “프루” 즉 후대에 “특”이라고 발음되는, 양털이나 야크털로 짠 두꺼운 모직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新唐書』는 “귀인은 大拂廬에 거주하고 백성들은 小拂廬에 거주한다.”고 썼다. 당시의 “拂廬”는 명대부터 “氍毹”라고 적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 중국에까지 이어진다. 명의 宋應星은 『天工開物』 <毡绒> 항목에 “무릇 毡绒은 백색과 흑색이 본색이며 나머지는 모두 물들인 색이다. 氍毹나 氍毹 등의 명칭은 모두 華와 夷가 각각의 方語로 이름붙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sup>7)</sup> 氍毹라는 명칭은 명대에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한편 위의 기록은 팍모두파를 위시한 주요 교파들이 거주하며 현대의 西藏自治區와 대체로 일치하는 중앙티베트에 대한 기록인데, 전통적으로 티베트는 그 외에도 청해와 감숙 일부인 암도(amdo) 지역, 그리고 사천 서부와 운남 일부인 도캄(mdo khams, 朵甘)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明會典』은 이들 지역의 조공 물품도 명에 중앙티베트와 거의 유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캄 지역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3) “西番古吐番地、元時為郡縣。洪武初、因其舊職。於是烏思藏番僧、有闡教王、闡化王、輔教王、贊善王、統化番民。又有護教王、大乘法王、大寶法王、凡七王、俱賜銀印。令比歲或間歲朝貢。貢物 畫佛、銅佛、銅塔、舍利、各色足力麻、各色鐵力麻、各色氍毹、珊瑚、犀角、左髻、毛纓、酥油、明盔、明甲、刀、劍 (『大明會典』卷108·朝貢四·西戎下·烏思藏)”

4) 달라이 라마의 교파인 겐룩派(dge lugs pa)는 14세기 초에 등장한 가장 신생 교파로, 17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기존 교파들과 갈등하며 힘겹게 존속하였다. 이는 대체로 중국 역사의 명대와 일치한다. 달라이 라마가 몽골 호쇼드 부의 구시 칸의 도움을 얻어 티베트를 장악하는 것은 1642년의 일이다.

5) 최고 세력이던 팍모두파의 座主에게는 명은 闡化王 칭호를 주었다. 그러나 그 외의 칭호들은 일관되게 일정한 교파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

6) 『舊唐書』吐蕃,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정사 외국전.

7) “凡毡绒白黑为本色, 其余皆染色。其氍毹、氍毹等名称, 皆华夷各方语所命。”(明 宋應星, 『天工开物』, 「乃服·褐毡」)

洪武 7년, 朵甘衛를 승급하여 西安行都指揮使司로 하고 銀印을 주었다. 18년, 朵甘思宣慰使司와 萬戶府, 招討司, 東道萬戶府, 塔千戶所로 고치고 매년 한 번 進貢하게 하였다. ... 隆慶 3년, 3년에 한 번 進貢하게 하였다. ... 공물로 여러 색 足力麻, 여러 색 鐵力麻 여러 색 氍毹, 左髻, 明盔, 長刀가 있었다.<sup>8)</sup>

그런데 『明會典』의 이 목록은 티베트인들이 그때그때 바친 물품이라기보다 티베트와 명이 서로 약속한 규정을 적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조공 내용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明實錄』은 중앙티베트를 비롯한 청해, 감숙 지역과 사천 지역의 티베트인 집단의 수도 방문과 조공을 다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록은 『明會典』과 다소 다르나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 즉 氍毹이다.

烏思藏 지역의 果加 등 사원의 라마 번승 빠마겐 등이 來朝하여 甲, 氍毹 등을 바쳤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채폐표리, 차, 초정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

烏思藏 남련사 등 사원의 라마 번승 庵配 등이 來朝하여 氍毹 등을 바쳤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채폐와 의복을 차등 있게 주었다.<sup>9)</sup>

위장 麥朋 등 사원 도강 라마 번승 예세 린첸(也失言千) 등이 來朝하여 氍毹와 방물을 바쳤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채폐표리, 초정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sup>10)</sup>

관련 기록이 상당히 많으므로 여기에 다 적지는 못하나, 이러한 양상은 明末까지 이어졌다. 萬曆 45년, 역시 당시 중앙티베트의 최고 종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팍 모두파의 闡化王은 국사 쇠남 겐첸(bsoḍ nams rgyal mtshan, Ch. 鎖南堅參) 등 1천여 명을 파견하여 珊瑚와 氍毹를 진헌하였고<sup>11)</sup> 萬曆 46년에도 산호, 서각, 氍毹 등을 바쳤다.<sup>12)</sup> 티베트인들이 명 조정에게 주로 氍毹를 가져간 것은 『明史』 外國傳에서

8) “洪武七年，升朵甘衛為西安行都指揮使司，給銀印。十八年，改朵甘思宣慰使司、及萬戶府、招討司、東道萬戶府、塔千戶所、每年一貢。... 隆慶三年、定俱三年一貢。... 貢物 各色足力麻、各色鐵力麻、各色氍毹、左髻、明盔、長刀(『大明會典』卷108·朝貢四·西戎下·朵甘思朵甘直管招討司附).” 이는 암도의 洮州, 岷州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조주와 민주의 番僧들은 ... 공물로 銅佛, 佛畫, 사리, 말, 낙타, 酥油, 청염, 청목향, 세르마, 테르마, 특(氍毹), 左髻, 毛纓, 明盔, 明甲, 腰刀가 있었다 (“洮岷等處番僧 ... 貢物: 銅佛、畫佛、舍利子、馬、駝、酥油、青鹽、青木香、足力麻、鐵力麻、氍毹、左髻、毛纓、明盔、明甲、腰刀 (『大明會典』卷之一百八·朝貢四·西戎下·洮岷等處番僧)”)”

9) “烏思藏 南連查等寺 刺麻番僧 庵配等來朝 貢 氍毹等物，賜宴并綵幣衣服有差.”(『英宗睿皇帝實錄』卷二百七十九 天順元年六月二日)

10) “烏思藏 麥朋等寺 都綱刺麻 番僧也失言千等 來朝 貢氍毹 方物，賜宴及綵幣表裏鈔錠等物 有差.”(『英宗睿皇帝實錄』卷三百二十七 天順五年四月十九日)

11) “萬曆四十五年 ... 烏思藏 闡化王 差國師鎖南堅參等 一千名 進獻珊瑚 氍毹等物”(『神宗顯皇帝實錄』卷五百五十六 萬曆四十五年四月四日)

12) 만력 46년, ... 중앙티베트의 천화왕이 번승 삼뎨 도르지 등 15명을 파견하여 산호, 서각, 氍毹 등 물품을 바쳤다. (“萬曆四十六年 ... 烏思藏 闡化王差 番僧三旦朵兒只等一十五名 進獻珊瑚、犀角、氍毹等物(『神宗顯皇帝實錄』卷五百七十 萬曆四十六年五月二十一日)”)”

“弘治 12년(1499)에 禮部의 관원이 아뢰기를, “長河西 및 烏思藏의 여러 蕃人이 동시에 함께 진공하니, 사신이 2,800여 명에 이릅니다. 청하옵건대 수신에게 넘치게 보내지 말도록 유지를 내리십시오.”라고 하니, 역시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 후 온 자들이 더욱 많아져 끝내 물리칠 수가 없었다. 가정 3년(1524)에 1,000명을 넘지 않도록 법령을 정했다. 용경 3년(1569)에, 500명만 전상(全賞)하고 8명만 경사에 이르는 것을 제도로 정하였는데, 闡教王과 같이 하였다. 그들의 공물은 珊瑚·氍毹 등이었는데, 모두 『闡化王傳』에 기재된 것에 준하였다. 여러 蕃人의 진공은 모두 이와 같았다.”<sup>13)</sup>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氍毹는 원대에 대칸에게 보냈을 물품 목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대에는 황제에게 가장 빈번히 “바친” 물품인 것이다.

## II. 달라이 라마의 선물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아왕 롱상 가초는 몽골 호쇼드부의 도움을 받아 중앙티베트를 장악했다. 이때부터 겐룩파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는 사실상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직 티베트를 장악하기 전에도 이미 몽골 초원의 여러 수령들은 티베트로 순례를 왔고 달라이 라마에게 예경하였다. 그의 자서전은 달라이 라마 선정 후 몇 년 뒤인 9살 때, 라싸로 순례를 온 몽골 타이지(tha'i ji)와 그 권속들에게 자신이 칭호를 내려주고 좋은 물건을 사여해 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

라싸로 와서 說法園(gsung chos ra ba)에 세라, 대뽕의 승려들이 모였는데 대단히 많은 무리들의 한 가운데에서 타이지(tha'i ji)가, 비단, 금, 은을 필두로 한 漢地와 몽골의 물품 대 보시를 일만 개 바쳤다. [타이지의] 근신인 승려 따원따이진(tA 'on ta'i sbyin) 법주는 천 가지를 바쳤다. 다창(僧院)의 법주와 다르칸 의사(dar khan em chi) 두 사람이 백가지를 바쳤다. 세첸 법주도 역시 30여개 정도를 냈다. ... 타이지와 그 권속들은 돌아가기로 하고 간덴 포당의 大廳에 줄지어 앉아 있다가 타이지가 나에게 緣起의 방식으로 '달라이 라마 바즈라다라(tA la'i bla ma bdzra dhA ra)'라고 하는 칭호를 다시 또 주는 방식으로 주었다. [나는] 타이지에게 '타이순 흥타이지(tha'i sun hung tha'i ji)'라는 칭호를 주고 法主, 善人 귀족들에게도 칭호를 주었는데 통역사가 큰 목소리로 소리쳐 옛날 몽골의 방식 그대로 하였고, 다창 법주가 올린 구두 보고를 따라 셸오가 마련하여 시행하니 대단히 잘 되었다. 타이지를 필두로 한, 새로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珊瑚(byu ru), 琥珀(spos shel), 남(snam)과 특(phrug) 등 이별의 선물을 모두 풍성하게 주었다.<sup>14)</sup>

13) “弘治十二年，禮官言：「長河西及烏〈期〉[斯]藏諸番，一時並貢，使者至二千八百餘人。乞諭守臣無濫送。」亦報可。然其後來者愈多，卒不能却。嘉靖三年定令不得過一千人。隆慶三年定五百人全賞·遣八人赴京之制，如闡教諸王。其貢物則珊瑚·氍毹之屬，悉準『闡化王傳』所載。諸番貢皆如之。”

즉 몽골의 타이지는 달라이 라마에게 “중국의 물품인 비단, 금, 은을 필두로 한” 보시를 바쳤고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특산물인 남(snam)과 특(phrug)을 회賜한 것이다.<sup>15)</sup> 비단이나 금, 은에 비해 그 가치가 높지는 않았을지라도 라마가 특별히 선정한 하사품이 특이라는 것은 티베트에서 이 물품이 대단히 가치가 높았을 것을 보여준다.

관련 내용을 실은 티베트 기록은 더 보이지 않지만 달라이 라마가 유라시아의 다른 군주와 수령들에게 티베트 모직물 특을 선물한 것은 새로 들어선 왕조 淸의 기록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淸을 세운 만주인들은 건국 이전부터 몽골과 때로는 연맹하고 때로는 복속시키면서 티베트 불교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고 수도 북경에 여러 티베트 불교 사원을 세웠다. 특히 乾隆帝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피서지인 熱河에 중앙티베트의 사원을 그대로 모방한 사원을 하나씩 지었다. 티베트 승려들은 국초부터 빈번히 초청을 받아 淸 조정을 방문하였고 이때 승려들은 황제에게 불상 등 불교 용품 외에 氍毹, 즉 특을 비롯한 티베트의 특산물을 선물했다. 『大清會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달라이 라마(達賴喇嘛)와 뽌첸 어르더니(班臣額爾德尼)는 경축하는 일 외에 따로 壽帕, 산호, 호박, 염주, 티베트 향(藏香), 氍毹를 바친다.<sup>16)</sup>

또한, 준가르를 피해 서쪽으로 갔다가 준가르 멸망 이후 돌아온 토르구트와 청해 몽골은 달라이 라마, 뽌첸 라마가 바치는 물품 중 불상 등을 제외하고 티베트 향과 氍毹를 똑같이 바치고 있다. 또한 중앙티베트의 기타 승려들이 보내는 것도 “달라이 라마와 같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 “lha sar phyin gsung chos ra bar ser 'bras kyi dge 'dun 'dus pas gtsos khrom shin tu che ba'i dbus tha'i jis gos dar gser dngul gyis mtshon pa'i rgya hor gyi spyad pa snangs che ba'i khri 'bul/ nang skor gyi ser mo ba tA 'on ta'i sbyin chos rjes stong 'bul/ grwa tshang chos rje dang dar khan em chi gnyis kyis brgya 'bul/ se chen chos rjes kyang grangs sum cu skor bstar/ ... tha'i ji dpon g.yog phyir 'byon gdong dga' ldan pho brang tshoms chen du bzhugs gral thog tha'i ji des nged la rten 'brel gyi sgor tA la'i bla ma bdzra dhA ra zhes pa'i ming yang skyor gyi tshul du btags/ tha'i ji la tha'i sun hung tha'i ji'i mtshan dang/ chos rje mi bzang drag rigs nams la cho lo ster bar lo tsA bas skad chen pos 'bod pa snga dus kyi sog po'i lugs srol ji lta ba bzhin grwa tshang chos rje'i snyan sgron phul ba ltar zhal ngos bkod pas phyogs par mdzad song ba legs tshogs che ba byung/ tha'i jis gtsos gsar 'grul log mi rnams la byu ru spos shel snam phrug sogs gang la gang 'tsham gyi rdzong ba rgyas par byas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 hor gyi ban de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i 'di snang 'khrul pa'i rol rtsed rtogs brjod kyi tshul du bkod pa du kU la'o gos bzang*, Lhasa: Bod 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9, pp.78-81)”

15) 이 보시와 회賜가, 칭호를 서로 주고받은 후에 이루어졌고 그 의식이 옛날 몽골제국 시기의 방식대로 행해졌다는 것에서 남snam과 특phrug이 이전 몽골제국 시기에도 선물로 몽골인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위 기록이 언급하고 있는 시기는 明 말기이며 달라이 라마의 교파가 티베트 전체를 장악하기 전이다.

16) “達賴喇嘛 班臣額爾德尼 於慶祝之外 別具壽帕 珊瑚 琥珀 數珠 藏香 氍毹 以貢(『欽定大清會典』卷18, 「理藩院」).”

할하, 오이라드는 낙타와 말, 湯羊을 공물로 바치고 토르구트와 청해는 티베트 향과 氈氍, 말을 바친다. 西藏이 바치는 것은 달라이 라마와 같다.<sup>17)</sup>

청해 고원에도 다수의 티베트인이 살았고 이들도 아마 氈氍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16세기 이후 이 지역에 진입한 몽골인들도 직접 생산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 조정에 氈氍를 보내고 있다. 앞에서 본대로 氈氍는 의복을 만들거나 천막을 만드는 데 쓰였고 티베트 고위 라마와 귀족들은 티베트의 추위를 막기 위해 氈氍로 만든 가사를 입었다. 이는 조선의 학자들에게도 알려졌고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喇嘛僧은 곧 西藏의 番僧인데, 이들은 모두 붉은 禪衣를 입고 누런 左髻冠을 쓰고 팔뚝을 드러내고 맨발인데다 손발에는 다 사슬을 채우고 귀에는 금고리를 달고 팔뚝에는 용무늬(龍文)를 자자(刺)하였다. 大寶法王은 황색 氈氍로 된 관을 썼는데, 말갈기 같은 털이 달렸고 모양은 마치 가죽신처럼 생겨 높이가 두 자 남짓하며, 또 금으로 짠 禪衣를 입었는데, 소매가 없이 왼쪽 어깨에 걸쳐 온몸을 옷으로 싸다(『五洲衍文長箋散稿』, 「釋典總說」).<sup>18)</sup>

티베트인들은 元代부터 明代를 지나 清代까지 중원에 있던 대간이나 황제에게 보낸 불상이나 氈氍로 대표되는 모직물을 보내고 있다. 그 직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명 정통 연간 사천의 한 관료 侯軌은 사천을 통해 명 수도로 “進貢”하러 가는 티베트 승려들의 접대와 이송 문제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四川左布政使 侯軌 등이 주를 올려 말하기를 ... 臣 등이 간절히 생각건대 각 승려들은 番地에서 나고 자라 말이 통하지 않고 다만 通事의 통역에 의존하는데 생각건대 [번승과 역관이] 서로 사귀어 생겨, 가까운 것을 멀다고 하며<sup>19)</sup> 譏察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그 바치는 것은 모두, 겨우 사리, 佛像, 氈氍, 茜草 등이거나 중하급의 여위고 약한 말에 지나지 않고, 그 뜻은 進貢이라는 것을 거짓 명분으로 하여 사실은 몰래 金銀을 가지고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가 私茶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sup>20)</sup>

즉 명 조정이 그들로부터 겨우 사리나 불상, 氈氍 모직물에 “불과한” 것을 받느라 관청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물자를 조정으로 이송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조악한 물건들(粗惡之物)은 변경에 그대로 남기고 사람도 예로써 대해주

17) “喀爾喀厄魯特以駝馬湯羊 土爾古特青海以藏香氈氍馬 西藏貢與達賴喇嘛同.”

18) “喇嘛僧 卽西藏番僧。紅色禪衣。戴黃左髻冠。袒臂跣足。手脚皆鑲兜脫。耳朵金環。臂刺文龍。大寶法王冠黃色氈氍有鬣。狀似靴。高二尺餘。被織金禪衣。無袖袂掛左肩。”

19) 즉 암도나 캄이 아니라 중앙티베트에서 왔다고 거짓으로 보고한다는 것.

20) “四川左布政使侯軌等奏比奉勅 ... 臣等切思 各僧生長番地 語言不通 止憑通事傳譯 慮有交結 以近作遠 無由譏察 况其所進 皆不過 舍利 佛像 氈氍 茜草等物 中下羸弱等馬。其意 盖假進貢之名 潛帶金銀 候回日 市買私茶等貨(『英宗睿皇帝實錄』卷一百七十七 正統十四年 四月 二日).”

고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sup>21)</sup> 그러나 조정에서는 예부상서 胡濙 등이, 멀리서 오는 티베트인과 변경에서 오는 티베트인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며 조정에 바치기에 정 마땅치 않은 진공품은 外庫에 두면 된다는 의견을 내어 이에 반대하였다.<sup>22)</sup> 그리고 청대에는 織染局에서 氍毹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乾隆 47년 주를 올려 한 해에 段紗 38필, 屯絹 2백필, 大紅 長毛 氍毹 40필을 짤 것을 허락받았다.<sup>23)</sup>

그리고 조선의 기록에 조선 사신들이 청에 갔다가 氍毹를 받아왔다고 적힌 것이 남아 있다. 즉 정조 9년(건륭50, 1785) 謝恩正使 朴明源이 장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황제가 사은하는 표문을 훑어보고 명령을 내리기를, ‘국왕에 사례하는 글과 아울러 표문에 따르는 공헌 방물(貢獻方物)을 보니, 모두 정성을 알 수가 있다. 모든 공물을 해당 아문(衙門)에 알려주고 은혜를 다하여 상을 주도록 할 것이다. 전번에 사신 서명(西明)과 아숙(阿肅)을 보내었는데, 북경(北京)에 돌아와서 복명하면서 자세히 아뢰기를, 「해당 국왕이 즉석에서 지은 시(詩)로 보아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아울러 그 지은 시를 바쳐서 보게 하였다. 짐이 이를 읽어보고 매우 가상하게 여겨 상으로서 내부(內府)에 있는 송판(宋板)을 모방한 《오경전부(五經全部)》와 아울러 필묵(筆墨) 등의 물건을 주어서 특별히 우대하는 뜻을 보였었다. 이것은 곧 보통으로 우대하고 상을 준 것인데, 반드시 전사(專使)가 와서 사은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흠차(欽此)하였습니다. 내각(內閣)에서 특별히 송판본을 모방하여 《오경전부》 12투와 벼루 1개, 화전지(花箋紙) 2권, 휘묵(徽墨) 4갑, 호필(湖筆) 4갑, 감옥 여의(嵌玉如意) 1자루, 문죽합(文竹盒) 4개, 파려기(玻璃器) 4건, 자기(磁器) 4건, 우추(羽綯) 4필, 정향견(程鄉繭) 4필, 홍사녕주(紅絲寧紬) 4필, 홍氍毹(紅氍毹) 4개를 주었는데, 예부에서 통역(任譯)을 불러다가 전

21) 侯軛은 멀리 중앙티베트에서 왔다고 해도 모두 조정으로 갈 수 있게 하지 말고 몇 명만 뽑아 가게 하며 말이나 물품도 아주 좋은 것만 조정으로 이송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邊軍에게 남겨둘 것을 요구 하였다. “이들 때문에 오는 길에 배와 수레와 人力을 다수 사용하며 운송은 몇 년 몇 달이 걸리니 길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관할 청이 이들을 대접하느라 피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잔악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명령을 내리셔서 금후로는 番僧이 進貢을 오면 비록 말은 멀리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近邊者의 예에 따라 몇 명만 헤아려 뽑아 공물을 보내게 하고 上馬는 수도로 보내고 나머지 방물과 마필은 모두 官庫에 두고 邊軍이 타도록 주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로써 대하고 돌아가게 하십시오(以此緣途多用船車人力, 運送連年累月, 絡繹道路, 所司非惟疲於供億 抑且罹其凌虐. 乞勅 今後 番僧進貢 雖稱遠方者 亦如近邊者例 量撥數人 送其貢物 上馬赴京 其餘方物馬匹 悉收官庫 及撥邊軍騎操 餘人 悉禮待, 遣回.)”라고 하였다.

22) “예부상서 胡濙 등이 논의하여 생각하기를 번승의 원근은 같지 않으니 하나로 생각하여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그 방물은 이전에 바치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은 외고에 저장하면 됩니다. 알 등이 말한 것은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황제가 옳다고 여겼다(禮部尚書胡濙等議 以為番僧遠近不同 難以一槩 遣回. 其方物例 該御前奏進不宜收貯外庫 軛等所言難允. 上然之.)”

23) “四十七年奏準 歲造段紗 三十八疋 屯絹二百疋 大紅長毛氍毹四十疋”(『大清會典則例』180卷 卷一百六十七內務府 清文淵閣四庫全書本)

해 주었기 때문에, 신 등이 일일이 내려주는 물건을 받았습니다.<sup>24)</sup>

이 일은 6대 뵤첸 라마가 건륭제의 칠순에 초대되어 온 지 얼마 후의 일이므로 이 특은 그가 선물한 것을 다시 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청 직역국에서 짠 것이라고 하면 청이 만든 氍毹 직물은 그 원재료를 중앙티베트나 압도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청은 이것을 구하여 붉은 색으로 염색한 氍毹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조선으로 전해진 것이다.

## 結論

요약하면, 몽골제국시기부터 중앙유라시아 군주들의 스승으로 자리한 티베트 승려들은 그들로부터 대단한 보시를 받았다. 몽골제국의 대칸들은 5대 쿠빌라이 이후 티베트 불교를 국교처럼 받들었으며 티베트 승려들은 帝師에 임명되어 누구보다 대단한 권세와 부를 누렸다. 明은 몽골과 같이 티베트를 장악하지는 못하였으나 영향력은 잃고 싶지 않아했고 그들에게 칭호를 주고 “조공”의 이름으로 오게 하여 많은 물품을 주었다. 몽골과 함께 나라를 세운 만주 역시 일찍부터 티베트 불교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여 대량의 보시를 주었다. 그리고 티베트의 라마들은 그들에게 설법과 戒를 주고 佛像, 佛畫를 주는 것과 더불어 티베트 특유의 모직물인 특 즉 한문 사료에 氍毹라고 적힌 직물을 선물했다. 이는 달라이 라마부터 그 아래의 수령들도 마찬가지였다. 중앙티베트에는 이 특 만을 생산하고 모든 세금과 노역에서 면제되는 집단이 따로 있었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25)</sup> 현대에 들어서도 특 즉 氍毹는 살아남아서 중국 정부가 氍毹를 티베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특산물로 홍보하고 있고 여러 전시회나 경제 박람회 등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24) “皇帝覽謝恩表文，下旨曰：“覽王奏謝，並隨表貢獻方物，俱見愜忱。所有貢物，該衙門知道，着加恩賞賚。再前遣使西明、阿肅，回京復命，具奏該國王，卽席賦詩，頗知好學，並所賦詩章呈覽。朕閱之，深爲嘉獎，着加賞內府，仿宋板五經全部，並筆墨等物，以示優眷。此乃尋常優賚，不必專使謝恩。”欽此。自內閣特頒仿宋板五經全部十二套、硯一方、花箋紙二卷、徽墨四匣、湖筆四匣、嵌玉如意一柄、文竹盒四個、玻璃器四件、磁器四件、羽縐四疋、程鄉繭四疋、紅絲寧絢四疋、紅氍毹四個。禮部招任譯傳給，故臣等一一祇受賜物。”(『正祖實錄』19권, 正祖 9년2월14일 甲午, 번역은 국역조선왕조실록에서)

25) 廖東凡, 「西藏何時有了氍毹」, 『藏地風俗』, 中國藏學出版社, 2008.



【제5발표】

## 명대 공문용 종이의 공급

정상호(전북대)

- 
1. 공문지
  2. 명 이전의 공문지
  3. 명대의 公文紙
  4. 명대 종이의 공급방식
  5. 명초 종이의 공급 職掌의 변화
  6. 결론



# 명대 공문용 종이의 공급방식

정상호(전북대)

공문서는 국가가 정책을 시행하는 도구이며 국가의 정령이 전달되는 매개체다. 공문서를 통해 국가의 정치가 작동하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문서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공문서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개는 공문서의 작성과 격식, 행이제도의 측면에서 다루었고 공문서가 작성되는 물질적 매개체인 종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sup>1)</sup> 종이에 대한 연구는 또 하나의 방대한 영역이다. 종이에 관한 연구는 제지업의 관점에서, 출판·인쇄의 관점에서, 미술·예술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종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 즉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종이를 탐구 대상으로 한다.

## 1. 공문지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공문용 종이 즉, 公文紙는 명대 문헌에서 公用紙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것은 供應紙札라고도 한다. 供應이란 명대 관청에서 필요한 물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公用紙張은 명대 관청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이를 의미하며 또한 명대 황실에서 의례·외교·예술 목적에서 사용하는 고급 종이인 上用紙張과 구별된다.

公文紙라는 용어는 사료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공문을 작성하는데 사용했던 종이 또는 공문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종이를 가리키는 명칭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저마다 다르게 사용되었다. 孫繼民은 이러한 용어가 천양지차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公文紙 외에도 公牘紙, 文牘紙, 官冊紙, 冊子紙, 冊籍紙, 官紙, 官文書紙, 庫鈔紙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sup>2)</sup>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공문지는 명대 관청에서 행정의 목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종이, 공문용 종이를 가리킨다. 먼저 공문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sup>3)</sup> 『大明律』에서는 制書와 官文書의 기첩나 분실 등을 금지하는 등 공문서와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지만, 관문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이것은 『大明律附例』와 『大明律釋義』, 『

1) 현재까지 명대 공문지의 공급과 관련된 연구는 丁春梅, 樊如霞, 「明代官府公文用紙來源初探」, 『檔案學通訊』, 2001년4期, 郭敏, 「明代公文紙的來源、流通與價格」, 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22년이 있다.

2) 손계민은 公文紙를 관문서로 사용되다가 폐기되어 나중에 紙背에 인쇄된 檔冊, 賬簿, 書啓와 같은 문서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다. 孫繼民, 張恒, 「古籍公文紙背文獻學的內涵與外延」, 『寧夏社會科學』, 2018年第4期, 205~206쪽.

3) 중국학계에서는 공문서와 민간문서를 구분하고 있는데 “檔案은 반드시 公文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해 일반적으로 公文을 檔案이라 칭한다. 이와 다르게 일본학계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법을 사용하는데 문서의 작성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문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적 기구에서 제작한 문서를 의미하며 사문서는 개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한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학계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안광호, 「중국 민간고문서의 의미와 지역적 분포 분석 - 明代 이후의 민간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라문화연구소·이야기연구소/귀주문서연구회 공동학술회, 한중 민간고문서와 일상생활 이야기의 재발견, 전북전주: 전북대학교전라문화연구소, 2023년.

『讀律瑣言』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大明律』의 官文書에 관한 조문이 唐律의 「公式令」을 연용한 것이므로 따라서 명률에서 사용되는 관문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唐律疏議』에 의하면 官文書는 “在司에서 일상행정에서 사용하는 文書를 의미하며 有印과 無印”을 모두 포함한다. 『당률소의』에서는 官文書의 자세한 분류를 열거하였는데 그것은 “獄案과 婚姻, 良賤, 勳賞, 黜陟, 授官除免과 같은 것(之類)”이다. 또한 그 속에서 “之類”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설명을 두었다. “‘之類’라고 칭한 것은, “倉糧財物, 行軍簿帳과 戶籍, 手實과 같은 것(之屬)이다”라고 하였다.<sup>4)</sup> 명률에서 공문서의 규정은 당률의 것을 이어받았으므로 명률에서 관문서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률과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문서는 관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司法, 行政, 軍事, 人事, 經濟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문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지칭하는 공문서는 곧 명대 각급 관청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관문서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을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황제의 명의 하에 발행된 詔, 敕, 令과 6부 등의 아문에서 황제를 대상으로 收發하는 題本과 奏本 등의 문서 그리고 일반 아문 사이에서 교환하는 照會, 咨呈 등이 있다. 이외에도 관이 아닌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문서가 있는데 榜文, 手本, 信牌 등이 있다. 또한 행정기구에서 이상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즉 賬冊, 獄案의 訟詞 등의 문서 또한 공문서의 범위에 속한다.<sup>5)</sup>

이러한 문서는 종이를 재료로 작성되기 때문에 종이의 공급은 행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명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이가 어떻게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2. 명 이전의 공문지

종이는 후한 말기에 발명이 되었다고 한다. 동진 安帝시기 元興 원년(402) “以紙代簡”의 명령이 있는 뒤 종이는 죽간을 대신하여 공문서의 작성 재료로 사용되었다. 당대의 관문서에 관한 규정은 「公式令」을 비롯한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公式令은 당대 관문서의 형식 및 생산과 발송 그리고 전달 수신 절차, 公文書의 양식과 관련된 수이다.<sup>6)</sup>

당대에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종이가 일반 사문서에 사용되는 종리와 구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公式令」에서는 관련 규정이 보이지 않고 『翰林志』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敕書·德音·立後·建儲·大誅討·免三公宰相·命將에 사용하는 것을 制라고 하고 白麻紙를 사용하며 …… 賜與·征召·宣索·處分에 사용하는 것을 詔라고 하며 白藤紙를 사용한다. 慰軍旅에는 黃麻紙를 사용한다. …… 太清宮·道觀薦告詞文에서는 青藤紙를 사용한다. …… 諸陵薦告·上表·內道觀歎道文에서는 白麻紙를 사용한다. …… 將相告身에는 金花五色綾紙를 사용한다”고 하였다.<sup>7)</sup> 여기에 白麻紙와 黃麻紙와 같이 종리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와 같은 규정

4) 『唐律疏議』 속에서 官文書는 制敕이나 奏抄와 같은 황제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曹漫之, 『唐律疏議譯注』,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9年, 392, 662쪽.

5)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의 공문서에 대한 정의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존재한다. “광의의 공문서는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의미하며 협의의 공문서는 법률조령과 관계된 문서만을 지칭한다.” 卜憲群, 「秦漢公文文書與官僚行政管理」, 『歷史研究』, 1997年第4期, 36쪽.

6) 이완석, “唐代 王言 문서의 생산과 유통 - 唐 公式令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48 (2018). 102쪽

은 동진시기부터 사용되었던 白黃의 구별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외에도 『寶晉英光集』에서 “사천의 麻紙는 풀을 먹이지 않고 아교로 黃紙를 만든다. 唐의 詔敕이 모두 이것을 사용하였던 이유이고 黃白의 구별이 있다”고 했다.<sup>9)</sup> 또한 “종이의 촘촘함이 川紙만한 것이 없다. 때문에 詔敕은 모두 이것을 사용했고 臣下가 上表할 때 僭越하지 못하게 했다.”<sup>10)</sup> 이를 보면 黃白의 구별 이외에도 종이의 품질에 따라 관문서에 상하의 구별을 두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에 “白紙가 蟲蛀가 많다”고 하여 당 고종 연간에 “尙書省에서 포고하여 諸州와 諸縣에서 모두 黃紙를 사용하도록 했다.”<sup>11)</sup>

송대에 쓰여진 『野客叢書』에서는 “敕은 예전에는 白紙를 썼다. 당 고종 上元연간에 공문의 제도를 내려 이것을 永式으로 하게 했으며, 白紙는 多蠹하다고 하여 마침내 黃紙를 쓰도록 했다. 制書는 黃麻紙를 사용하였고 學士制, 中書에서 쓰는 것이 아닌 것은 白麻紙를 쓰게 했다. 따라서 黃麻紙와 白麻紙의 구별이 있다. 詔는 隋 시기에 대개 靑紙를 사용했다. 楚王倫、太子通 등의 열전을 보면 劉禹錫의 시에 ‘優詔發靑紙’라고 했다. 表 또한 黃紙를 썼다. 『前燕錄』을 보면 岷山公이 黃紙로 上表하였다고 했다. 『北史』에서 邢邵가 다른 사람을 위해 表를 지었는데 직접 黃紙를 사서 表를 지어 보냈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옛사람이 上下에 사용하는 종이에 구매받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sup>12)</sup>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여기에서 ‘옛사람이 上下에 사용하는 종이에 구매받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한 것은 송대에는 당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엄격하게 변화했다는 인식을 볼 수 있다.<sup>13)</sup>

송대는 당대에 비해 제지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sup>14)</sup> 종이의 품질이 상승함과 더불어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종이는 사문서의 것과 달라야 한다는 태도가 보인다. ‘公牘紙’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종이가 사문서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대에는 당대와 비교할 때 공문서의 작성규칙이 보다 정교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종이에도 구별을 두었다. 송대에는 紙式을 만들어 이를 產地로 보내 종이를 제작하게 하였고 이것을 민간의 私人是 구매하거나 사

7) 李肇, 『翰林志』, 『文淵閣四庫全書』, 595冊, 1983年.

8) 후한 시기에 종이가 발명되었지만 공문서가 종이로 대체된 것은 동진 시기의 일이다. 동진 시기에 죽간을 대신하여 종이를 공문서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 때 黃紙로 白簡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 黃紙와 白簡이 黃紙와 白紙의 구분으로 변화한 것 같다. 韓樹峰, 「漢晉時期的黃簿與黃籍」, 『史學月刊』, 2016年第9期, 26쪽. 黃紙와 白紙의 구분은 그 색에서 나온다. 黃紙란 “白紙를 물들여서(潢) 만든 것”이다. 賈思勰, 『齊民要術』卷3, 「雜說三十」, 商務印書館, 1930年, 41쪽. 富穀至는 죽간과 목간의 색은 황색을 띠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黃簡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富穀至, 『木簡竹簡述說的古代中國一書寫材料的文化史』, 劉恒武譯, 人民出版社, 2007年, 125쪽. 그렇기 때문에 관문서는 황색의 재료에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종이가 등장한 이후에도 종이의 사용에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관문서가 어느 정도의 엄숙성을 갖기 위해서 종이를 황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등장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은 황색으로 염색할 경우 충해를 방지할 수 있고 보관에 유리하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黃紙와 白紙의 구분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뒷날 위진남북조 시기에 黃紙와 白簡의 구분이 문서의 성격이 아닌 관원의 품급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李正君, 「兩晉南朝時期的黃紙」, 『史志學刊』, 2017年第6期, 8쪽.

9) 米芾, 『寶晉英光集』補遺, 「十紙說」, 『文淵閣四庫全書』, 1116冊, 1983年, 144쪽.

10) 米芾, 『寶晉英光集』補遺, 「十紙說」, 『文淵閣四庫全書』, 1116冊, 1983年, 144쪽.

11) 高承, 『事物紀原』卷1, 「黃勅」, 『文淵閣四庫全書』, 920冊, 1983年.

12) 王懋, 『野客叢書』卷8, 「禁用黃」, 『叢書集成初編』, 304冊, 1935年, 75~76쪽.

13) 돈황에서 발견된 『唐開元公式令殘卷』과 같은 당대 관문서의 殘卷을 통해 당대 관문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돈황에서 출토된 당대 관문서의 목록은 『法國國家圖書館藏敦煌西域文獻』, 18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年, 363~365쪽, 劉俊文, 『敦煌吐魯番唐代法制文書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9年, 221~245쪽을 참고할 것.

14) 胡小鵬, 『中國手工業經濟通史』宋元卷, 魏明孔主編,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4年, 723쪽.

용할 수 없었다. 송 진종 大中祥符 원년(1008) 開封府에서 말하길 三司에서 이전에 紙式을 만들어 길이 2尺3寸으로 하여 洪州와 歙州로 보내 종이를 만들게 하였는데 中樞·樞密·學士院에게 보내는 것 외에는 단지 次等의 黃紙를 사용하게 할 것이고 詔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淺色을 염색하도록 하며 이후로 다소 踰式하는 자는 과거의 금령을 申明하도록 청하자 이를 따랐다.<sup>15)</sup> 신종 熙寧 7년(1074) 樞密副都承旨 張誠一이 三司에서 필요한 年例의 宣紙를 采購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朝廷에서 杭州에서 생산하는 三司의 전용 종이에 대해 이후로 公私의 常用紙의 長短廣狹은 宣紙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도록 했다.<sup>16)</sup>

송대에 관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주로 紙戶에 의해 配作의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溫州의 紙戶는 관을 위해 蠶紙를 생산하였다. 일반적으로 上供紙 속에는 賦稅와 收買가 함께 존재하는데 양자는 대개 구분되지 않는다. 收買의 경우 “造買”로 칭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 조정은 交鈔를 발행하기 위해 官營作坊을 세우고 종이를 생산하도록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熙寧 5년(1072) 成都府에 抄紙場을 설치하고 四川에서 交子를 발행하기 위한 종이를 생산했다. 남송 시기 조정에서는 徽州와 成都에도 設場하고 종이를 생산하게 했다. 남송 효종 乾道 4년(1168)에는 또 거리가 멀어 運費가 비싸다는 이유에서 臨安의 “赤山之湖濱”에 局을 설치하고 종이를 만들게 했다. 官營作坊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주로 印鈔에 사용되었고 다른 공문을 위한 종이와는 관계가 크지 않다.

원대의 경우 官紙는 官辦紙廠에서 생산하는 종이고 系官人匠에서 생산하는 종이의 두가지가 있다. 원대 공부에서는 抄紙坊、白紙坊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중에서 白紙坊은 秩이 從八品이었고 “掌造詔旨宣敕紙札”하였으며 大都의 南郊에 두었다.<sup>17)</sup> 內宮 중에도 또한 作坊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明仁殿紙와 端本堂紙가 품질이 높기로 유명했다. 이외에도 원은 중요 종이 생산지에 官紙局院을 설치했다. 예를 들어 徽州路에는 雜造局이 있어 紙鈔、公文用紙의 생산을 담당했다. 徽州에서 생산되던 皮紙 또한 官紙廠에서 만들었다.

원대에는 和買로 종이를 얻는 것 외에도 죄인에게서 몰수한 贓罰을 사용하여 종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얻은 종이를 繳贓紙라고 하였다. 원 말 『憲台通紀』는 江南行御史台에서 贓罰錢을 이용하여 工本과 紙札의 비용을 냈는데 浙西廉訪司에서 開板印造한 것이다. 또 『憲台通紀續集』 역시 南台의 贓罰錢 내에서 工本紙札을 얻었다고 하였다.<sup>18)</sup> 원의 行御史台의 관원이 “提調”의 방식으로 贓罰을 이용해 종이를 구매하고 인쇄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대 지방기구의 재정운용이 자유로웠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것이 뒷날 명대에도 연용되었다는 점에서 원과 명의 직접적인 연결을 볼 수 있다.

### 3. 명대의 公文紙

명대 종이의 產紙는 전역에 분포되어 남쪽에서는 江西, 福建, 浙江, 安徽, 四川, 廣東 등이 주요 산지가 있었다. 그중에서 江西, 福建, 浙江과 安徽(南直隸) 등이 유명했다. 북쪽에는 山西와 河北, 陝西가 있었다. 종이는 대개 竹, 麻, 皮와 稻草를 재료로 하였다. 竹紙는 주로 남쪽 지방에서 생산이 되었고 그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書寫와 印刷에 사용되었다. 그

15) 徐松, 『宋會要輯稿』, 「刑法二」, 2014年, 8288쪽.

16) 徐松, 『宋會要輯稿』, 「刑法二」, 2014年, 8301쪽.

17) 『元史』卷85, 「百官一」, 1976年, 2140쪽.

18) 趙承禧, 『憲台通紀』, 「序」, 2002年, 4쪽; 唐惟明, 『憲台通紀續集』, 「序」, 2002年, 88쪽.

다음에는 皮紙가 있었으며 남북 모두에서 생산되었으며 書畫와 印刷, 종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麻紙는 주로 북쪽의 山西, 陝西, 甘肅, 山東과 만주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생산량이 많지 않다.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상등품은 정부에서 구매하여 宮廷에서 사용하였다. 楮皮로 만든 宣德紙는 당시 최상품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浙江의 桑皮紙, 江西와 福建의 連史·毛邊竹紙도 널리 사용되었다. 명말 常熟의 장서가이자 출판업자였던 毛晉이 명사를 초청하여 교감하여 十三經, 十七史 등을 출판하였는데 그가 사용한 종이는 모두 江西에서 나온 것이었고 두꺼운 것을 毛邊, 얇은 것을 毛太라고 하였다.<sup>19)</sup> 曹昭은 『新增格古要論』에서 당시 품질이 우수한 종이를 열거하였는데 蜀箋, 歙紙, 澄心堂紙, 西山의 觀音紙, 廣信紙, 常山紙, 英山紙, 撫州紙, 紹興紙 등이 있었다.<sup>20)</sup> 만력 연간 江西의 『江西省大志』에는 당시 생산되었던 종이의 종류를 적었는데 모두 28種의 紙名이 나온다.<sup>21)</sup>

명대의 종이가 전대와 다른 점은 명대에는 종이의 용도에 따른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이다.<sup>22)</sup> 명대 이전의 종이는 대개 생산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吳紙, 常山東紙, 開化紙, 鉛山紙, 安慶紙, 九江紙, 池紙, 椒紙, 蜀箋, 高麗紙, 歙紙, 涇縣紙, 新安紙, 英山紙 등이 있다. 또는 생산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데 生紙와 熟紙가 있다. (生紙를 가공한 것이 곧 熟紙이다) 또 종이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는 澄心堂紙, 明仁殿紙, 端本堂紙가 있다. 또 종이의 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는 白紙, 赤紙, 蠟紙, 油紙가 있다. 종이의 재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는 竹紙, 皮紙, 麻紙, 桑皮紙 등이 있다. 이와 다르게 명대에는 공문서의 격식을 기준으로 한 이름이 많이 보인다. 물론 명 이전에도 唐代의 案紙와 敕紙, 元代의 北紙와 行台紙 또는 本道廉訪司紙, 寶鈔紙와 같은 이름이 보이지만 이것은 종이의 사용처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많지 않다. 그러나 명대에는 공문서의 이름을 가진 紙名이 다수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 金榜紙, 黃冊紙, 軍冊紙, 曆日紙, 勸合紙, 堂木紙, 糊窗紙, 錫箔紙 등이 있다. 이외에도 江西의 鉛山에서 생산되는 奏本紙와 柬帖紙, 그리고 江西의 臨川에서 생산되는 小箋紙, 江西의 南昌府西山의 連七紙, 浙江 衢州府常山과 南直隸 廬州英山の 榜紙처럼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종이를 생산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sup>23)</sup> 모두 특정 공문의 격식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公文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榜紙가 있다. 榜紙는 흰색의 폭이 넓은 종이를 의미하며 주로 殿試의 揭榜이나 官府의 告示에 사용된다. 榜紙라는 이름은 명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관청에서 榜文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宣德 9년(1434) 규정에 따르면 “모든 白榜紙는 세로 4尺4寸, 너비 4尺이었다.”<sup>24)</sup> 榜紙는 원래 大紙로 만들었고 강도와 장력이 다소 강했다. 대개 宣紙·桑皮紙·竹紙를 갖고 만들었다.<sup>25)</sup>

中夾紙는 양면의 濕紙를 中夾하여 한 층의 薄樹皮로 만들었는데 강도가 비교적 강하여 민간에서는 물품을 포장하는데 많이 사용했다.<sup>26)</sup> 명 중기에 中夾紙는 또한 鹽引이나 茶票引을

19) 呂凌峰, 李亮, 『科技明朝』, 南京: 南京出版社, 2015年, 289쪽.

20) 曹昭, 『新增格古要論』卷9, 「文房論」, 1987年, 147~169쪽.

21) 王宗沐, 萬曆『江西省大志』卷8, 「楮書·解運」, 2018年, 385~386쪽.

22) 명 이전 唐·宋·元代의 紙名에 대해서는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四) ——唐代紙名(上)」, 『中華紙業』, 2016年21期;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五) ——唐代紙名(下)」, 『中華紙業』, 2016年23期;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六) ——宋代紙名(上)」, 『中華紙業』, 2017年1期;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七) ——宋代紙名(下)」, 『中華紙業』, 2017年3期;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八) ——元代紙名」, 『中華紙業』, 2017年5期の 글을 참고할 것.

23) 呂凌峰, 李亮, 『明朝科技』, 南京: 南京出版社, 2015年, 289쪽.

24) 萬曆『大明會典』卷195, 「工部十五·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343~344쪽.

25)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九) ——明代紙名(上)」, 『中華紙業』, 2017年第07期, 97쪽.

26)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九) ——明代紙名(上)」, 『中華紙業』, 2017年7期, 97쪽.

인쇄하는데 많이 사용하였다.

勸合紙는 공문서의 勸合을 위해 반분하여 날인하는데 사용한 종이를 말한다. 명대 이전에도 중요한 공문이나 서신에는 모두 반으로 나누어 날인한 뒤 뒤에 이를 대조하여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sup>27)</sup> 명 초 空印案 이후 모든 문서에 감합을 사용하도록 했다.

문文紙는 廢麻、樹皮 또는 草類를 抄造하여 만들어 비교적 두껍고 대개 狀詞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했다. 뒤에는 書法·拓帖 등 문서 작성용 종이로 쓰였다.<sup>28)</sup>

連七紙는 비교적 두껍고 폭이 넓은 竹紙로 다소 뽀뽀하다. 1장의 종이를 7장의 종이로 나누어 만들 수 있어서 종이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았다.<sup>29)</sup>

奏本紙는 조정의 관원이 奏章을 작성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던 종이다. 제조 시에 楮皮를 원료로 일부 棉花와 絲綿을 넣어 비교적 질이 좋고 가격도 다소 높았다. 그중에서 江西의 鉛山石塘에서 만든 것이 가장 유명하다.<sup>30)</sup>

手本紙는 비교적 저급의 公文紙로 대개 手本을 작성할 때 사용되었다. 명대의 手本은 비공식적인 공문 격식으로 公文의 草擬 副本을 작성하거나 상황을 설명을 설명하거나 증빙이 필요할 때, 財物의 清單를 작성할 때 사용되었다. 手本の 격식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명대 후기에는 사용범위가 점차 늘어났다.<sup>31)</sup>

『大明會典』 등에는 명대 공문의 격식,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종이와 관련된 것만 살펴보면, 먼저 表文은 黃紙를, 箋文에는 紅紙를 사용한다. 詔令文도 黃紙를 사용하고 외교문서에는 灑金紙를 사용한다. 屠隆의 『考槃餘事』에서 “지금 大內에서는 細密灑金五色粉箋·五色大簾紙·灑金紙를 사용한다”고 했다.<sup>32)</sup>

#### 4. 명대 종이의 공급방식

명대 행정제도의 완비, 정부조직의 방대함은 종이의 수요를 증대시켰다. 전대의 왕조는 대개 관영 공장에서 종이를 생산하게 하거나 紙戶에게서 종이를 세금으로 납부 또는 和賣하게 했는데 명은 이를 이어받음과 동시에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켰다. 명대 관청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上用紙張과 公用紙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 초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上貢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무 연간 贓罰과 囚人紙가 등장하였고 마침내 公用紙張은 囚人紙의 방법으로 공급하였고 上用紙張만 上貢으로 공급하였다. 전자는 刑部(와 都察院)에서 관리하였고 후자는 工부와 內府의 司禮監이 담당하였다. 명 중기 이후 전자는 은납화가 이루어졌다.

##### ·上貢

먼저 上貢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任土作貢’은 오랫동안 정부가 필요한 物料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sup>33)</sup> 명 초의 기록에서 종이의 上供해야 했던 것을 발

27)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十) ——明代紙名 (中)」, 『中華紙業』, 2017年9期, 96쪽.

28)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十二) ——清代紙名 (上)」, 『中華紙業』, 2017年15期, 108쪽.

29)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十一) ——明代紙名 (下)」, 『中華紙業』, 2017年11期, 82쪽.

30) 劉仁慶, 「古紙紙名研究與討論 (之十一) ——明代紙名 (下)」, 『中華紙業』, 2017年11期, 84쪽.

31) 李萍, 何朝暉, 「明代的手本」, 『歷史檔案』, 2013年4期, 131쪽.

32) 屠隆, 『考槃餘事』卷2, 「國朝紙」, 『叢書集成初編』, 1559冊, 1935年.

33) 岩見宏에 따르면 明代에 上供物料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물에 상응하는 생

견할 수 있는데 湖州府長興縣에서는 “紙札，歲辦一萬六千三百二十張”을 上供하였다. 武康縣에서도 “紙札，歲辦一十萬六千三百二十張”， 安吉縣도 “紙札，二萬四千七百二十張”을 上供하였다.<sup>34)</sup> 또한 명초 徽州府에서도 “國初에 歙縣은 매달 榜紙 4,800장을, 休寧縣에서는 매달 榜紙 3,800장, 績溪縣에서는 매달 榜紙 1,000장을 解納했다. 그 외에 各色紙를 매년 용도가 있을 때마다 곧 時估로 가격을 지불하여 和買하였는데 定額이나 定色이 없었다.”<sup>35)</sup> 만력『大明會典』에서는 각지에서 매년 上貢하였던 紙張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陝西, 15만장. 湖廣, 17만장. 山西, 10만장. 山東, 5만5천장. 福建, 4만장. 北平, 10만장. 浙江, 25만장. 江西 20만장. 河南, 5만5천장. 直隸, 38만장. 매 해 각지에서 거두는 것이 모두 150만장이다.”<sup>36)</sup>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北平과 直隸가 함께 나온다는 점이다. 萬曆『大明會典』에서 기록하는 貢紙의 수량은 正德『大明會典』의 기록을 연용한 것으로 그것은 홍무 26년에 편찬된 『諸司職掌』의 수치를 그대로 가져왔다. 따라서 이것이 홍무 연간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宣德 연간부터 上供은 改折의 방식으로 바뀌었고 아울러 鋪戶를 통해 買辦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sup>37)</sup> 종이의 경우 宣德 9년(1434) 황실 등에서 필요한 종이를 “모두 상인들에게 納價하여 收買하도록 하고 派貢을 면해주었다.”<sup>38)</sup> 명대 지방지에서도 ‘免派罷貢’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명대 徽州府는 송대 이후 중요한 종이의 산지였다. 弘治『徽州府志』의 「上供紙」에서도 이것은 ‘國初’의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휘주 외에도 浙江의 溫州도 종이의 생산으로 이름을 알렸다. 董准의 『岐海瑣談』에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我朝에서는 建牙鄉의 瞿溪에 開局하여 官원을 파견하여 종이의 생산을 監造하였다. 何東園이 태수로 온 뒤 그것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생각하여 劄議를 내어 그 물을 바꾸어 종이를 검게 만든 다음 地氣가 변하였다는 이유로 奏聞하여 성지를 받들어 勘實하여 마침내 除免을 받았다”고 하였다.<sup>39)</sup> 何東園이 溫州에 부임한 것은 선덕 연간의 일이므로 선덕 연간에 종이의 上供이 정지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江西와 浙江杭州에서도 비슷한 일화를 볼 수 있다. 『寒夜錄』에서 “國初에 貢紙는 吾郡의 西山에서 歲造하였다. 董以中貴, 翠岩寺의 遺址에 楮廠을 두었다. 其應聖宮의 서쪽에 皮庫를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楮皮를 보관하던 곳이다. 지금 그 관청을 信州로 옮겼고 廠과 寺를 모두 없앴다.”<sup>40)</sup> 또 『西湖遊覽志』에서도 명초 항주에 局을 설치하고 종이를 생산하였다가 뒤에 廢局한 일을 적고 있다. “近者에 鮑家田이 있는데 吳越의 相 鮑慶臣이 采地하던 곳이다. 皇明 선덕 연간에 白紙局을 설치하고 못에서 종이를 만들어 물이 오랫동안 흐려졌다. 局이 없어지자 泉이 다시 맑아졌다.”<sup>41)</sup>

산자를 특수한 人戶로 배정하여 직접 생산하게 하는 방식, 둘째는 人戶에게 임시로 役을 배당하여 거두는 방식, 셋째는 折納하여 稅糧으로 거두는 방식, 넷째는 稅關에서 實物로 抽分을 거두는 방식, 다섯째는 민간으로부터 買辦하는 것이다. 岩見宏, 『明代徭役制度の研究』, 同朋舍, 1986년, 34~40쪽.

34) 『永樂大典』 卷2277, 「吳興續志·田賦」(『永樂大典方志輯佚』, 2冊, 馬蓉等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2004년, 771, 776, 786쪽에서 재인용)

35) 汪舜民, 弘治『徽州府志』卷2, 「食貨一·土貢」, 『天一閣藏明代方志選刊』, 1964년, 280쪽.

36) 萬曆『大明會典』卷195, 「工部十五·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년, 343쪽.

37) 명대 鋪戶의 買辦이 출현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新宮學, 「明代北京における鋪戶の役之その銀納化—商工業者の實態之把握をめぐる—」, 『明清都市商業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7년. 唐文基, 「明代的鋪戶及其買辦制度」, 『曆史研究』, 1983年第5期.

38) 萬曆『大明會典』卷195, 「工部十五·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년, 343쪽.

39) 姜准, 『岐海瑣談』卷11, (俞光, 『溫州古代經濟史料彙編』,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4년, 307쪽에서 재인용) 何東園의 字는 文淵이고 선덕 5년(1430)에서 정통 원년(1436) 사이에 溫州知府를 지냈다.

40) 陳弘緒, 『寒夜錄』卷下, 『續修四庫全書』, 1134冊, 1995년, 733쪽.

## ·采造

종이의 免派罷貢 이후 황실과 조정에서 사용하는 上用紙張은 朝廷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종이의 산지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만력 연간 王宗沐은 江西의 造紙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王宗沐에 따르면 강서에서 供應하는 종이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종이가 부족할 때마다 乙字庫에서 上題하여 造紙하는 것”으로 大小衙門에서 建醮·賞邊하는데 사용했다. 둘째는 “司禮監에서 5년마다 上題하여 造紙하는 것”이며 御制書冊·手卷·畫軸을 제작할 때, 殿宇·窗櫺·板壁·榻子·仰塵를 糊飾하는데 사용했다.<sup>42)</sup> 『江西省大志』에 적힌 두 종류의 造紙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造紙年에 司禮監이 上題하여 造紙하는 것은 모두 28종이며 白紙·榜紙·中夾紙·勸合紙·結實榜紙·小開化呈文紙·結連三紙·綿連三紙·白連七紙·結連四紙·綿連四紙·毛邊紙·中夾紙·玉版紙·大白鹿紙·藤皮紙·大楮皮紙·大開化紙·大戶油紙·大綿紙·小綿紙·廣信青紙·青連七紙·鉛山奏本紙·竹運七紙·小白鹿紙·小楮皮紙·小戶油紙가 있다. … 5년에 한번 題造하고 때로는 10여 종, 때로는 26종까지도 造紙했다. 數目은 100여만 장을 만들고 때로는 196만장에 달하기도 했다. 종이가 부족할 때 마다 乙字庫에서 上題하여 造紙하는 것은 명목이 11종이 있는데 大白榜紙·大中夾紙·大開化紙·大玉版紙·大龍瀝紙·鉛山本紙·大青榜紙·紅榜紙·黃榜紙·綠榜紙·皂榜紙가 있으며 종이가 부족할 때마다 때로는 1종 많게는 3~5종을 만들었다. 數目도 때로는 100만장을 만들거나 많게는 2,3,9백만 장을 만들기도 했다. 造解에 기한이 없었고 각각의 길이와 너비, 크기도 각기 달랐다.”<sup>43)</sup>

王宗沐은 가정·융경·만력 연간 造紙의 수량을 적었는데 이를 보면 융경 6년에 900만장을 만든 것이 가장 많았고, 융경 4년에 76만장으로 가장 적었다.<sup>44)</sup> 이 종이는 모두 “內府의 供用에 充當”되는 것으로<sup>45)</sup> 만력 연간이 되면 강서의 수량은 대체로 196만 정도로 안정되지만 가정~만력 연간 생산량의 변화폭이 커서 6부 등의 아문에서 사용하는 公用紙張을 위한 공급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명대는 북경뿐만 아니라 남경의 內府에서도 종이를 요구하였는데 대개는 儀禮와 祭禮를 위한 것이었다. 남경의 上元·江寧의 두 현의 鋪戶에서 이러한 목적의 종이를 공급하였다.<sup>46)</sup> 嘉靖 연간의 사례를 보면 南京內府의 종이는 應天府의 上元·江寧縣의 鋪行을 통해 공급하였다. 가정 15년(1536) 南京工部에서 內府에 공급해야 하는 종이가 “大榜紙 30만장, 中夾紙 50만장, 奏本紙가 50만장”이었다. 구체적인 공급 경로를 보면 應天府의 上元·江寧 두 현에서 관원을 보내 “전년도 事例를 참고하여 鋪戶를 관청으로 拘集하여 街市의 時直에 따라 공정하게 估計한다. 白榜紙 1장에 가격이 얼마, 中夾紙 1장에 가격이 얼마, 奏本紙 1장에 가격이 얼마 등 양쪽이 공평해야 하며 官과 民 모두에게 손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격을 정한 이후 응천부에서는 “가격에 따라 價鈔가 모두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由를 발급하여 사람을 部에 보낸 뒤 증빙을 갖추어 보내면 內府로 가서 南京司禮監에서 勘습을 작성하여 南京天財庫에서 鈔貫을 수령하여 지급한다.”<sup>47)</sup>

41) 田汝成, 『西湖遊覽志』卷9, 「北山勝蹟」, 『中國方志叢書』, 1966年, 321쪽.

42) 王宗沐, 『江西省大志』卷8, 「楮書·御用」, 2018年, 387쪽.

43) 王宗沐, 『江西省大志』卷8, 「楮書·解運」, 2018年, 385~386쪽.

44) 王宗沐, 『江西省大志』卷8, 「楮書·御用」, 2018年, 387~389쪽.

45) 王宗沐, 『江西省大志』卷8, 「楮書·附楮槽利弊疏鈔」, 2018年, 389~395쪽.

46) 張永明, 『張莊僖文集』卷2, 「議處鋪行疏」, 『文淵閣四庫全書』, 1277冊, 1986年, 330~331쪽.

47) 孫懋, 『孫毅菴奏議』卷下, 「十分貧乏鋪行無力辦納重大紙張乞憐比例區處以便官民疏」, 『文淵閣四

上用紙張의 경우 內府가 중심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것 외에도 임시로 필요할 때마다 관원을 파견하여 종이를 만들도록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만력 5년(1577) 황실의 大婚을 맞이해 北京의 宛平縣 등 지역에서 여기에 필요한 종이를 만들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sup>48)</sup>

### · 贓罰

贓罰의 수입을 이용해 종이를 구매하는 것은 아마 원대의 사례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무 26년 刑部에서 贓罰의 수입을 이용해 종이를 買辦하여 중앙의 각 아문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sup>49)</sup>

贓罰은 죄인의 재산을 관에서 몰수한 것을 말한다. 명대 贓罰은 당률의 분류를 따라 監守盜·常人盜·竊盜·受財枉法·受財不枉法·坐贓의 6贓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관에서 몰수하여 贓罰의 수입이 되는 것은 3가지다. 홍무 26년(1393) “각지에서 官民이 법을 어겨 家財를 籍沒해야 하거나 또는 관리가 贓私을 받는 죄를 저질러 追沒된 金銀·錢鈔·衣服 등은 모두 각각 札付를 보내 贓罰庫에 보관한다.”<sup>50)</sup> 홍무 28년(1395), 각 部에서 원래 각 布政司·直隸의 府州에서 보내 온 贓銀 등을 직접 內府庫로 보내 보관하도록 했다. 永樂 21년(1423) 다시 각 처의 아문의 창고에 보관중인 贓銀을 조사하여 일률적으로 刑部로 보내 內承運庫에 轉送하여 보관하게 했다.<sup>51)</sup> 대개 명대 贓罰의 수입 중에서 金銀錢 등은 內承運庫로 보내고 현물은 贓罰庫에 보관했다.<sup>52)</sup> 贓罰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매년 달랐고 사용처 또한 다양했다. 吳振漢은 『萬曆會計錄』에 기록된 만력 6년(1578)의 수치(대략 17만)를 기준으로 만력 전기 매년 贓罰 수입의 총액이 20만 兩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sup>53)</sup>

贓罰 수입으로 종이를 구매하는 과정은 『大明會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무릇 本衙門에서 사용하는 奏啓本, 案驗·行移簿籍·囚人寫招服辯의 일체의 종이는 山西部에서 管掌한다. 매 季에 필요한 奏啓本 등의 종이가 얼마인지 계산하여 필요한 鈔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명백하게 갖추어 本部에서 文案한다. 이것을 湖廣部로 보내어 贓罰鈔 중에서 금액에 맞춰 지급한다. 관원을 街市에 파견하여 客商과 함께 판매하는 곳에 가서 時價에 따라 양쪽이 공평하게 收買한다. 필요한 수를 채우면 部로 온다. 堂上官이 인장을 사용하여 封鈐하고 庫子에게 주어 창고에 보관한다. 각 部에서 각 季에 사용하는 종이를 堂에 모을 올리면 湖廣部로 보내 立案하고 수에 따라 지급한다. 季가 끝나거나 종이를 모두 사용하면 각 部에서는 某事에 某色의 종이 얼마를 사용했는지 일일이 기록하여 本部에 보내면 각 部에서 사용한 종이가 얼마인지 명백하게 밝혀 附卷에 기록한다. 그 외의 季分은 전례에 따라 시행한다.”<sup>54)</sup>

贓罰 수입은 매년 다르고 일정하지 않았으며 사용 범위 또한 다양했다. 명 중기 이후 많은 관원들은 贓罰을 재량권이 있는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贓罰을 종이의 공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었다. 마침내 홍치 10년(1497), 도찰원과 형부의 종이가 부족할 경우 “兩法司의 贓罰銀에서 買辦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는데,<sup>55)</sup> 이것은 이미 贓罰의 수입이 종이를 공급

庫全書』, 429冊, 1983年, 346쪽.

48) 沈榜, 『宛署雜記』卷14, 「經費上·壇壝」; 卷15, 「經費下·內府」, 1980年, 121~122, 139, 141, 143~144쪽.

49) 萬曆『大明會典』卷179, 「刑部二十一·收買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180~181쪽.

50) 『諸司職掌』, 「戶部·贓罰」, 『續修四庫全書』, 748冊, 1994年, 632쪽.

51) 萬曆『大明會典』卷179, 「刑部二十一·收買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179쪽.

52) 『明史』卷79, 「志五十五·食貨三」, 1974年, 1926쪽.

53) 吳振漢, 「明代贓罰探析」, 『明代研究』, 2004年第7期, 10쪽.

54) 萬曆『大明會典』卷179, 「刑部二十一·收買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180~181쪽.

하는 방식에서 보조적인 방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 囚人紙

홍무 27년에는 재판의 審理를 거친 逃軍·逃囚·全家抄割起發·劫賊을 제외한 그 외의 官吏·軍·民人 罪囚 등에게 모두 종이 1분을 납부하도록 했다.<sup>56)</sup> 이것을 囚人紙 또는 囚人納紙라고 한다. 罪囚, 즉 재판이 끝난 뒤에 유죄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종이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1) 현대의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경우, 2) 재판이 종료된 이후 3) 유죄로 결정이 된 사람일 경우 종이를 납부하도록 한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벌금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의 경우 2) 재판이 끝나기 전 3) 유죄 무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원에게 종이를 납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홍무 연간의 규정에는 1분이라고만 하였지 몇 장을 내야 하는지, 어떤 종이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통 2년(1437)에 官吏·總小旗·舍人·糧長 등 종이를 납부해야 하는 職役의 명칭이 보이며 성화 연간에는 이것이 官紙·告紙·軍民紙의 3가지 구분법으로 정해졌다. 그 중에서 文武官正妻·監生·生員·吏典·總小旗·知印·承差·僧道官·醫生·天文生·應襲舍人·裏老 등은 官紙를 납부하고, 榜紙40張을 내게 했다. 軍校·灶匠·廚役·勇士·力士와 餘丁·陰陽人·民人·婦女 등은 民紙를 납부하며 中夾紙 50장, 奏本紙 10장, 手本紙 5장을 내게 했다. 홍무 연간에 逃軍·逃囚·全家抄割發配·搶劫된 경우 등의 인원에게는 종이를 납부하는 것이 면제되었다.

명대 소송을 심리하는 기구로는 중앙에 刑部가 있었고 都察院과 大理寺 또한 어느 정도 가능했다. 중앙의 三法司에서 거두어들이는 囚人紙의 양이 늘어나 이것이 중앙 행정기구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공급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자 홍치 연간에는 각 아문에서 사용하는 公用紙를 모두 法司에서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홍치 10년(1498), 吏戶禮兵工 등 부를 비롯한 각 아문에서 매년 사용하는 종이는 모두 刑部에서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만약 부족할 경우 도찰원에서 수령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兩法司에서 贓罰銀을 내어 買辦하도록 했다. 다시 홍치 16년(1503)에는 春秋 2季는 형부에서, 夏冬 2季는 도찰원에서 종이를 공급하도록 했다.<sup>57)</sup> 남경의 경우에는 모두 南京刑部에서 공급하도록 했다.<sup>58)</sup>

명대 중앙의 형부와 도찰원 이외에도 지방에도 州縣 등의 問刑衙門에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sup>59)</sup> 이외에도 按察司와 巡按御史 등의 아문에서도 소송을 심리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囚人紙를 징수할 수 있었다.

## 5. 명초 종이의 공급 職掌의 변화

55) 萬曆『大明會典』卷179, 「刑部二十一·收買紙札」,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182쪽.

56) 萬曆『大明會典』卷179, 「刑部二十一·收買紙割」,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181쪽.

57) 萬曆『大明會典』卷179, 「刑部二十一·收買紙割」, 『續修四庫全書』, 792冊, 1994年, 181쪽.

58) 鄭曉, 『鄭端簡公奏議』卷12, 「明職掌疏」, 『續修四庫全書』, 477冊, 2002年, 45쪽.

59) 명대 사법기구에서는 ‘在京’과 ‘在外’의 구분이 존재한다. 본문 속에서 ‘在京’은 곧 京師인 북경 뿐만 아니라 남경을 포함한다. ‘在外’는 곧 남북 양경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을 가리킨다. 佐立治人は 嘉靖本『問刑條例』을 근거로 ‘在京’에는 南京을 포함하지 않으며 남경은 ‘在京’에 속하지 않고 ‘在外’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佐立治人, 「明朝の立法·刑罰·裁判」, 『關西大學法學論集』67輯, 2018年6期, 289쪽.

명대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공문지 공급제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였을까. 명초 중앙아문의 공문지 공급제도에 대해서는 홍무 26년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萬曆『大明會典』은 명대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다. 여기에서 吏部의 것을 보면 “本部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홍무 26년, 刑部에 移咨하여 贓罰鈔 내에서 종이의 값으로 鈔를 수령하여 買用하며 명백히 그 내역을 立案하고 뒷날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다.<sup>60)</sup> 여기에서 다시 그 아래에 添注하여 “各部同”이라고 되어 이것이 吏·戶·禮·兵·工 등의 5부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문용 종이를 刑部の 贓罰을 재원으로 하여 買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회전』을 살펴보면 吏部 이외에 兵部에서 상응하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고<sup>61)</sup>, 戶·禮 2部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앞서의 기록 아래에 다시 “또, 매季에 각 司에서는 필요한 종이의 數目を 명백히 계산하여 本司(=稽勸淸吏司)로 보내 이것을 本部(=吏部)에 案呈하고 실제 지급한 數目を 기입한다. 이것을 手本을 갖추어 戶科로 가서 乙字號勘合을 수령하고 戶部로 가서 字號를 대조하여 같다면 底簿에 기록하고 勘合을 갖고 內府 乙字庫에 가서 기록한 수량에 따라 수령한 뒤 部로 돌아와 사용한다. 모두 사용하면 명백하게 사용한 것을 立案하여 뒷날의 증거로 삼는다.”<sup>62)</sup> 여기에서 “手本을 갖추어 戶科로 간다” 그리고 “戶部에서” 字號를 대조한다와 같은 표현은 이것이 戶部에서 掌管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勘合을 갖고 內府 乙字庫로 간다”는 말은 곧 종이를 乙字庫에서 수령한다는 것이 買用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명 앞의 내용과 서로 충돌한다.

그렇다면 萬曆『大明會典』 吏部條에는 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까. 사실 이것은 『회전』의 來源과 편찬 방식과 관계가 있다. 萬曆『大明會典』의 내용은 대개 正德『大明會典』에서 가져왔다. 또 正德『大明會典』의 내용은 『諸司職掌』에서 가져온 것이다. 『諸司職掌』은 홍무 26년에 편찬되었고 10門으로 나누어 吏·戶·禮·兵·刑·工의 6部와 都察院·通政司·大理寺·五軍都督府의 官制와 職掌을 기록하였다. 正德『大明會典』은 『諸司職掌』을 직접 인용하여 ‘職掌’에 두고 그 뒤에 ‘事例’의 형식으로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萬曆『大明會典』은 正德『大明會典』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職掌’에는 일괄적으로 “洪武二十六年”을 더하였고 그 다음에 “又”를 더하여 관련된 事例를 기록하였다.<sup>63)</sup> 正德『大明會典』의 사례는 대개 홍무 26년 이후의 것이지만, 또한 홍무 26년 이전의 사례까지 홍무 26년에 나온 『諸司職掌』의 뒤에 배치됨으로써 마치 그것이 홍무 26년의 일인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萬曆『大明會典』의 편찬자도 인식하고 있어 『重修凡例』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sup>64)</sup>

만약 正德『大明會典』과 홍무 26년의 『諸司職掌』의 것을 대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萬曆『大明會典』의 吏部條에 기록된 내용은 먼저 앞의 것은 正德『大明會典』의 職掌에서 온 것으로 그 출처는 『諸司職掌』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홍무 26년의 규정이다. 그러나 뒤의 것은 正德『大明會典』에서 “洪武間”의 事例이며 이것이 홍무 26년 이후의 것인지 이전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萬曆『大明會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홍무 연간의 규정을 이해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60) 萬曆『大明會典』卷11, 「吏部十·雜行」, 『續修四庫全書』, 789冊, 1994年, 194쪽.

61) 『諸司職掌』, 「兵部·紙割」, 『續修四庫全書』, 748冊, 2002年, 732쪽.

62) 萬曆『大明會典』卷11, 「吏部十·雜行」, 『續修四庫全書』, 789冊, 1994年, 194~195쪽.

63) 山根幸夫, 「明·淸の會典」, 滋賀秀三編, 『中國法制史:基本資料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93年, 479쪽.

64) 萬曆『大明會典』, 「重修凡例」, 『續修四庫全書』, 789冊, 1994年, 20쪽.

두 규정을 보면 앞의 것은 형부의 贓罰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上貢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홍무 연간에 이 두 공급방식은 공존하였을까 또는 선후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乙字庫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대 제도에서 倉은 米를 저장하고 庫는 재화를 저장한다. 명은 이른바 內府十庫라는 것을 설치하고 內廷에 필요한 재화를 저장하였는데 순서대로 甲·乙·丙·丁·戊字庫와, 承運庫·廣盈庫·廣惠庫·廣積庫와 贓罰庫가 있다.<sup>65)</sup> 이 內府十庫 중에서 乙字庫는 奏本等紙을 저장하는 곳이다. 乙字庫를 포함한 內府庫는 환관이 관리를 맡으며 호부에서 大使 1員, 司吏 1名, 攢典 1名을 두어 감독하였다.<sup>66)</sup>

앞서 말했듯이 명대 官制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료는 萬曆『大明會典』이며 그 외에 홍무 26년에 편찬된 『諸司職掌』이 있다. 그러나 『諸司職掌』보다도 앞선 『石刻職掌』이 존재한다.<sup>67)</sup> 『石刻職掌』이란 홍무 연간에 6부의 職掌을 石刻에 새겨 官廳의 안에 세운 것을 말하며 현재는 吏·戶·禮·刑部의 것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 「戶部石刻職掌」의 내용을 보면 總部·度支部·金部·庫部の 4부를 볼 수 있는데 이중 度支部의 職掌에서 “治經費、廩祿之事。凡賞賜：定例特恩優給。供應：供支物件公用紙割”라 하여 종이의 공급을 맡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68)</sup> 「戶部石刻職掌」의 내용을 통해서 홍무 26년 戶部에서 종이의 공급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萬曆『大明會典』에서 戶부와 乙字庫와 관련된 것은 홍무 26년 이전의 일이다. 이와 반대로 刑部の 경우에는 「刑部石刻職掌」의 總·比·司門·都官의 4부의 職掌 중에서 比部에 종이와 관련된 것이 없다가<sup>69)</sup> 『諸司職掌』에서는 比科에서 ‘收買紙札’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홍무 26년에 刑部가 종이의 공급에 관련된 일을 맡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乙字庫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락 연간에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명 중기부터는 乙字庫가 戶部가 아닌 兵部에 귀속되는데 이것은 호부가 더 이상 종이의 공급과 관련된 일을 맡지 않게 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sup>70)</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홍무 26년(1393) 공문용 종이의 공급은 이전, 上貢의 방식으로 공급하여 乙字庫에서 보관하였으며 戶部에서 관리하였다. 홍무 26년 이후 이것은 刑部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贓罰鈔를 이용하여 買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홍무 27년 이후 贓罰과 囚人紙가 병행되었다가 점차 囚人紙가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 6. 결론

65) 蘇新紅의 연구에 따르면 명대 內十庫는 반드시 10개의 庫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蘇新紅, 「明代的內府十庫——兼對清代〈明史〉等進行考證」, 『第十五屆明史國際學術研討會暨第五屆成繼光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3年.

66) 萬曆『大明會典』卷2, 「吏部二」, 卷7, 「吏部六」, 『續修四庫全書』, 789冊, 1994年, 61쪽, 125쪽.

67) 張榮林은 4부의 石刻職掌의 體例가 서로 달라 아마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각자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南京吏部志』에 기록된 「吏部石刻職掌」에서 “蓋洪武二十一年以前分職”이라고 한 것을 보면 「吏部石刻職掌」은 홍무 21년 이전에 쓰여진 것 같다. 「刑部石刻職掌」 아마 홍무 22년 또는 23년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石刻職掌에 대해서는 張榮林의 「明洪武朝之吏部職掌」, 『大陸雜誌』, 1979年第3期를 참고할 것.

68) 謝彬, 『南京戶部志』卷4, 「職守志」, 2a쪽.

69) 陶尚德, 『南京刑部志』卷2, 「司刑編」, 26b쪽.

70) 『明史』卷79, 「食貨三」, 1974年, 1926쪽.

명은 전대의 제도의 영향을 이어받아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켰다. 명대의 공문용 종이를 공급하는 방식은 上貢과 贓罰, 囚人紙와 같은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홍무 연간 上貢의 방식에서 贓罰과 囚人紙를 통한 공급으로 전환되었고 명 초에 다시 上貢이 폐지되고 贓罰과 囚人紙가 공존하다가 점차 囚人紙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 방식으로 정착이 되었다. 명대 황실에서 사용하는 종이 또는 儀禮나 祭禮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上用紙張은 公用紙張과 별개의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명대 공문제도 중에서 공문서와 관련된 것은 당과 송의 것을, 贓罰을 통한 공급은 원의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囚人紙를 이용한 것은 아마 명대의 고유한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囚人紙라는 것은 형부를 비롯한 法司와 問刑衙門에서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종이를 징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소송비용이었다. 명은 여기에서 얻은 종이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종이를 공급하였다. 북경의 公用紙張은 형부 및 도찰원 그리고 남경은 남경형부의 囚人紙에서 종이를 공급받았다. 지방의 경우에도 囚人紙를 징수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종이를 비롯한 행정비용을 충당하였다.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2차 연구토론회  
『동유라시아 지역 직물(織物)의 생산과 유통』

◎ 일시: 2023년 11월 11일(토) 14: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 P205호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  
됨(NRF-2020S1A6A3A01054082)



